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1판 개정전후대비표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i	**[일러두기]** ○ **법적 근거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해당 감염병의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 등에 대한 정보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응함 ○ **대응방향 관련** - 이 지침은 코로나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발생 상황, 역학조사 결과 및 관련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사례 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이 지침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침임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다른 지침과의 관계** -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함 * 예시 :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 지침」 -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의학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관련 학회 지침을 준용할 수 있음 ○ **법령명 약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예방법」	**[일러두기]** ○ **법적 근거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라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 이에 따라 대응함 ○ **대응방향 관련** - 이 지침은 코로나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발생 상황, 백신과 치료제의 활용 가능성 여부, 관련 연구결과 등에 따라 사례정의, 대응절차 등 주요 내용이 변경 가능함 - 따라서 이 지침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침임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다른 지침과의 관계** -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함 * 예시 :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 지침」 -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의학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관련 학회 지침을 준용할 수 있음 ○ **법령명 약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예방법」	〈지침관리팀〉 수정

<table>
<tr><th>쪽</th><th>현행(10-3판)</th><th>1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td><td>

[중앙방역대책본부 업무 분장표]

방역지원단	일상방역관리팀	· 방역수칙관리체계 전략 수립 · 방역수칙관리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과제 발굴 사업 · 방역수칙관리 지침 제·개정에 따른 부처별 세부지침 마련 지원
	환자관리팀	· 재택치료제도 운영 및 관리 · 코로나19 치료제 투여관리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환자관리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검토 · 환자관리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지침관리팀	·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관리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장례비 심사 및 비용 지원 ·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td><td>

[중앙방역대책본부 업무 분장표]

방역지원단	일상방역관리팀	· 방역수칙관리체계 전략 수립 · 방역수칙관리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과제 발굴 사업 · 방역수칙관리 지침 제·개정에 따른 부처별 세부지침 마련 지원
	환자관리팀	· 재택치료제도 운영 및 관리 · 코로나19 치료제 투여관리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환자관리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검토 · 환자관리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지침관리팀	·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관리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장례비 심사 및 비용 지원 ·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부서		업무
	방역시스템운영팀	·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 운영 및 관리 · COOV-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 기능 연계 및 관리 ·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코로나19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누리집 구축 및 관리 · 방역패스 정보 민간개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구축

</td><td>〈지침관리팀〉
수정

추가</td></tr>
<tr><td colspan="4">Ⅰ. 대응체계</td></tr>
<tr><td>3</td><td></td><td></td><td>〈지침관리팀〉
수정</td></tr>
</table>

<table>
<tr><th>쪽</th><th>현행(10-3판)</th><th>1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
<td></td>
<td>
Ⅰ 대응체계
1. 총칙
가. 법적 근거
○ 코로나19는 해당 감염병의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 등에 대한 정보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응함
참고자료 [부록 1]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적근거 주요 내용
나. 대응 방향
○ 조기 인지 및 발생양상 파악
○ 신속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환경관리
○ 코로나19의 예방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개인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 관리 정책
○ 감시-역학조사-관리 등을 통한 감염병 전파방지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교육·홍보로 감염예방
○ 지자체, 민간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의 협력 체계구축으로 지역사회 역량강화
〈관리정책 요약〉
<table>
<tr><th>감시</th><th>역학조사</th><th>관리</th><th>교육·홍보·협력</th></tr>
<tr><td>• 환자
- 환자 조기발견
- 집단발생 조기발견
• 병원체
- 바이러스 분리동정
- 의심 바이러스 확인
- 유전자분석 등</td><td>• 발생규모 파악
• 감염원 및 병원체규명
• 전파 차단
• 추가 발생 예방</td><td>• 환자
- 치료실시, 격리
• 접촉자
- 발병여부 확인
- 필요시 격리/ 감시
• 환경
- 소독 및 방역조치</td><td>• 지역사회 교육·홍보
- 개인위생
- 사회적 거리두기
• 지자체 역량강화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td></tr>
</table>
</td>
<td>
Ⅰ 대응체계
1. 총칙
가. 법적 근거
○ 코로나19는 '19년 12월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변이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위험이 우려되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대응함
참고자료 [부록 1]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적근거 주요 내용
나. 대응 방향
○ (전파 및 확산 최소화) 확진자 및 동거가족 등 밀접접촉자의 조기 인지 및 격리 조치
○ (의료대응 강화) 지속가능한 지역 의료대응체계를 통한 위중증, 사망 최소화
○ (감염위험 관리)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등에 대한 감염관리 및 생활 속 방역 관련 교육, 홍보 강화
다. 관리 정책
○ 감시-확진자조사-관리 등을 통한 감염병 전파 최소화
○ 개인위생, 거리두기 교육·홍보로 감염예방
○ 지자체, 민간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의 협력 체계구축으로 지역사회 역량강화
〈관리정책 요약〉
<table>
<tr><th>감시·조사</th><th>관리·대응</th><th>교육·홍보·협력</th></tr>
<tr><td>• 환자 발생
- 환자 조기발견
- 집단발생 조기발견
- 발생규모 파악
- 접촉자 조사
• 감염원 및 병원체규명
- 바이러스 분리동정
- 변이 바이러스 확인
- 유전자분석 등</td><td>• 환자 관리
- 고위험군 집중관리
- 중증화 예방
- 격리
• 접촉자 격리/감시
• 의료대응
- 중증도별 관리체계 구축
(재택, 생활치료, 병원)
• 환경
- 소독 및 방역조치</td><td>• 지역사회 교육·홍보
- 개인위생
- 사회적 거리두기
- 참여형 자율방역
• 지자체 역량강화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td></tr>
</table>
</td>
</tr>
<tr><td>4</td><td></td><td></td><td>〈지침관리팀〉
수정</td></tr>
</table>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가. 관련 기구 설치·운영 ○ 질병관리청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가. 관련 기구 설치·운영 ○ 질병관리청 내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 보건복지부 내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5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지원(고위험군 및 중환자 위주로 전환)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강화 - 검역 강화 등을 통한 추가 유입 방지 등 - 거점병원 기능을 외래진료에서 입원 및 중환자 관리로 전환 - 사망자 등 중증환자 감시체계 운영 -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운영 - 실험실 검사 관리(지자체 및 민간의료기관 검사역량 강화 지원) - 언론소통(브리핑, 보도자료, 취재지원), 민원대응 및 국민소통 관리 - 필요시 재난 문자 발송 요청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지원(고위험군 및 중환자 위주로 전환)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 검역 강화 등을 통한 추가 유입 방지 등 - 사망자 등 중증환자 감시체계 운영 - 치료제 지원·관리,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 백신연구개발, 효능평가, 치료제 효능평가 -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운영 - 실험실 검사 관리(지자체 및 민간의료기관 검사역량 강화 지원) - 언론소통(브리핑, 보도자료, 취재지원), 민원대응 및 국민소통 관리	〈지침관리팀〉 수정
8	제60조(방역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	제60조(방역관)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	〈지침관리팀〉 수정
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9	○ **확진환자** : 임상양상과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PUI1)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 - (PUI2) 해외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 (PUI3)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삭제)	(지침관리팀)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사례 정의 수정

<table>
<tr><th>쪽</th><th>현행(10-3판)</th><th>1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9</td><td>▶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무료검사 대상(별도공지 시까지)
- 지역 구분 없이 검사 가능
<table><tr><th>보건소 선별진료소</th><th>의료기관 선별진료소▶</th><th>임시선별검사소</th></tr><tr><td>유증상자, 무증상자 모두 무료검사</td><td>모두 무료검사 (별도공지 시까지 한시적 운영)</td><td>모두 무료검사 (사례정의 해당자는 선별진료소 방문권고)</td></tr></table>▶ 증상 유무 관계없이 모두 검사비 무료, 진료비 본인 부담
- 단, 의사·약사의 검사 권고를 받은 코로나19 유증상 환자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별도 진찰 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전액 무료(진료비 별도 청구 불가)
▶ 본인 필요에 의해서 검사 받는 경우(해외출국용, 출장·여행 등), 비급여 적용으로 검사비 본인부담</td><td>▶ 무료 검사 대상(별도 공지시 까지)
- PCR 검사 우선순위 해당 시 (부록 38 참고)
- 지역 구분 없이 검사 가능
<table><tr><th>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th><th>의료기관 선별진료소*</th></tr><tr><td>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④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⑤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td><td>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④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td></tr></table>*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 시, 진료비 등 비용 발생 가능</td><td>〈진단총괄팀〉
우선순위에 따른 PCR 검사 체계로 검사전략 전환에 따른 개정</td></tr>
<tr><td>10</td><td>▶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 (PUI1로 신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td><td>(삭제)</td><td>〈지침관리팀〉
우선순위에 따른 PCR 검사 체계로 검사전략 전환에 따른 개정</td></tr>
<tr><td>10</td><td>1. 감염병의심자 정의</td><td>2. 감염병의심자 정의</td><td>(지침관리팀)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사례</td></tr>
</table>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5호의2(2020.3.4. 시행) ○ **감염병의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함 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 접촉자 여부는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 ▶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사람 외에도 신고나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음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5호의2(2020.3.4. 시행) ○ **감염병의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함 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삭제)	정의 수정
Ⅲ. 감염병환자 신고 · 보고체계			
11 ~ 15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1. 개요 ○ ---------- (중간 생략) 5. 확진환자 사망 신고 · 보고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전체 삭제) 1. 개요	(지침관리팀)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사례 정의 수정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전체 개정)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1. 확진환자 신고·보고** ○ (의료기관) 확진환자를 최초로 인지한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즉시 보고**(유선, 기타 핫라인 등 방법)하고, 발생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 (보건소) 확진환자를 최초로 인지한 **보건소는 사도로 즉시 보고하고,** 발생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검사수탁기관으로부터 확진(양성)결과 확인 - (보건소별 이관) 확진환자 실거주지 보건소가 다른 경우 최초인지 보건소는 신고서 입력 후 실거주지 보건소로 이관하여 관리 연계, 보건소는 매일 이관 사항 확인 - (의료기관 신고 건 확인·승인) 관할 의료기관 확진자 신고 건을 매일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승인 ▶주의: 실거주지로 이관하는 확진자의 경우 이미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신고하였으므로, 중복으로 신고하지 말 것 ▶ 검사결과 양성 건은 반드시 당일 입력해야 하며, 당일 보고 건에 한하여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에서 확진환자번호 부여 관련서식 [서식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확진자에 대한 별도 정보관리]**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 內)** : hcr.hira.or.kr (크롬 브라우저 사용) ▶ 신고된 확진환자에 대한 **확진환자번호 부여 이후 동 시스템에 명단 반영되며(매일), 시도 병상배정반에서 첫 병상배정결과를 입력(오입력 건 수정 필수)**한 이후 **보건소(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의료기관에서** 각각 순서에 따라 **(격리사진, 격리해제, 전원, 사망, 치료제)정보 관리** 필수 ▶ 교호등 격리 : 해당 발생지역의 보건소(자가격리)로 입력 참고자료 [부록 34]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문	(지침관리팀, 상황실, 진단총괄팀)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사례정의 수정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2. 확진환자 사망 신고·보고 ○ (의료기관/보건소) 확진환자가 사망한 경우 최초 인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는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련서식 [서식 2]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 감염병 환자 보고 등록에서 사망보고를 선택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회 입력 -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모두 입력. [발생 및 사망 신고·보고]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 환자감시'를 통해 보고 ○ (보건소) 사망사례 최초 인지 의료기관 등(재택치료 시 사망 포함)을 통해 사망신고를 최초로 받은 **보건소는 사망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관련자료* 제출**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13조, 제18조의4, 제76조의2(2021.3.9.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1호의4서식(2020.12.30. 시행) ▶ 확진 후 격리 치료기관 중 관할지역이 아닌 타지역 의료기관 입원시 관련자료도 함께 제출 ▶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등 관련자료 - **의무기록**은 격리치료 기간 중 주치의 작성 경과기록지, 흉부 X-ray 또는 CT 영상판독기록지, 입원초기 작성한 (기초)간호정보조사지 및 응급실 내원 후 입원한 자는 응급실 기록지 등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 후 확진 등 특이사례의 경우 확진 전·후 의무기록 또는 사망진단서 등 관련자료 일체 [제출 방법]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 **이메일**(kdca21@korea.kr)을 이용하여 **제출** ▶ **우편제출** 시 **사전연락**(043) 719-7747, 7746, 7744) **필수** - 제출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내 질병관리청 14동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17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조 ▶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강화조치로,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력 관계 없이 격리면제 불가(격리면제서 소지자 제외) ▶ 신 설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조 ▶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강화조치로,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력 관계 없이 격리면제 불가(격리면제서 소지자 제외)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앱을 통한 모니터링 지속(격리면제자 제외)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앱 설치는 현행과 동일하게 지속 시행
17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검역단계 무증상자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검역단계 무증상자 	〈해외출입국관리팀〉 격리기간 단축(10일->7일)
19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나. 기관별 역할 2) 보건소 ○(자가격리 대상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통지서를 재발급하고 자가격리 장소에서 입국일로부터 10일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시설격리 대상자) 시설 관할 보건소는 격리통지서를 재발급하고 지정 격리시설에서 입국일로부터 10일간 시설격리 및 능동감시~~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나. 기관별 역할 2) 보건소 ○(자가격리 대상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통지서를 재발급하고 자가격리 장소에서 입국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삭 제	격리기간 단축(10일->7일) 및 시설격리대상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아 삭제함(격리관리팀 확인)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18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다. 격리장소 이동 및 격리 조치 1) 격리 장소 이동 ○ 관할 지자체(자가격리) 또는 격리시설 관리주체(시설격리)가 이동조치 시행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다. 격리장소 이동 및 격리 조치 1) 격리 장소 이동 ○ 관할 지자체(자가격리) 또는 격리시설 관리주체(시설격리)가 이동조치 시행 ○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시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해외출입국관리팀〉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시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하도록 旣시행중 *검역정책과-243호(2022.1.13.), 방대본-2446호(2022.1.19.)
20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 나. 기관별 역할 1) 질병관리청,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 공항 입국자의 경우, 특별입국절차 간소화 운영 중 – 적용대상 : 공항 입국 격리제외자▸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격리면제서 소지자 – 입국시 자가격리앱 설치, 전화수신 확인, 검역확인증 발급 적용 제외 ▶ 체류자격이 A1·A2 이거나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대상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를 받고 자가진단앱은 설치함 ▶ 입국시 접종 이력을 증빙한 예방접종완료자는 입국 후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앱 설치 안내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 나. 기관별 역할 1) 질병관리청,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 공항 입국자의 경우, 특별입국절차 간소화 운영 중 – 적용대상 : 공항 입국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및 격리제외자▸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격리면제서 소지자 – 입국시 자가격리앱 설치, 전화수신 확인, 검역확인증 발급 적용 제외 ▶ 체류자격이 A1·A2 이거나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대상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를 받고 자가진단앱은 설치함 ▶ 입국시 접종 이력을 증빙한 예방접종완료자는 입국 후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앱 설치 안내	〈해외출입국관리팀〉 오미크론 대응과 관련하여 예방접종력 관계 없이 격리함에 따라 예방접종완료자와 격리제외자 구분
21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 ▶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강화조치로,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력 관계 없이 격리면제 불가 ~~가. 증상별 대응 절차~~ ~~○검역단계 유증상자~~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 ▶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강화조치로,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력 관계 없이 격리면제 불가, 일반적 관리방안 적용	오미크론 대응에 따라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격리함에 따라, 일반적 관리 방안 적용(중복 내용 삭제)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2. 일반적 관리방안 →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유증상자" 절차와 동일~~ ~~○검역단계 유증상자~~ ~~▶ "2. 일반적 관리방안 →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무증상자" 절차와 동일~~ 나. 기관별 역할 1) 질병관리청,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 **공항 입국자의 경우, 특별입국절차 간소화 운영 중** – 적용대상 : 공항 입국 격리제외자▸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격리면제서 소지자 – 입국시 자가격리앱 설치, 전화수신 확인, 검역확인증 발급 적용 제외 ▶ 체류자격이 A1·A2 이거나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대상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를 받고 자가진단앱은 설치함 ▶ 입국시 접종 이력을 증빙한 예방접종완료자는 입국 후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앱 설치 안내 ~~2) 보건소~~ ~~○(입국자 확인) ~~ ~~○(PCR검사) ~~ ~~○(관리방법 안내) ~~ ~~다. 자가 이동 방법~~ ~~○ ~~ 라. 해외 접종이력 등록 ○ 대응 절차(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삭 제 가. 기관별 역할 1) 질병관리청,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 **공항 입국자의 경우, 특별입국절차 간소화 운영 중** – 적용대상 : 공항 입국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및 격리제외자▸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격리면제서 소지자 – 입국시 자가격리앱 설치, 전화수신 확인, 검역확인증 발급 적용 제외 ▶ 체류자격이 A1·A2 이거나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대상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를 받고 자가진단앱은 설치함 ▶ 입국시 접종 이력을 증빙한 예방접종완료자는 입국 후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앱 설치 안내 삭 제 나. 해외 접종이력 등록 ○ 대응 절차(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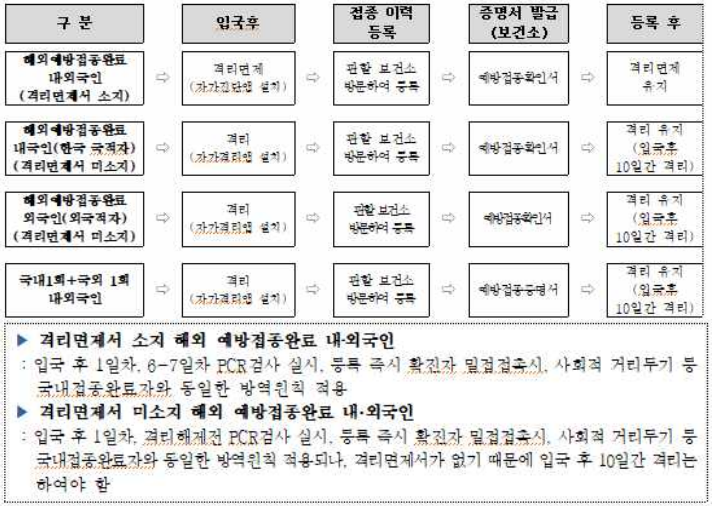 구 분 / 입국후 / 접종 이력 등록 / 증명서 발급(보건소) / 등록 후 해외예방접종완료 내외국인(격리면제서 소지) ⇨ 격리면제(자가진단앱 설치) ⇨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 예방접종확인서 ⇨ 격리면제 유지 해외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격리면제서 미소지) ⇨ 격리(자가격리앱 설치) ⇨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 예방접종확인서 ⇨ 격리 유지(입국후 10일간 격리) 해외예방접종완료 외국인(외국적자)(격리면제서 미소지) ⇨ 격리(자가격리앱 설치) ⇨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 예방접종확인서 ⇨ 격리 유지(입국후 10일간 격리) 국내1회+국외 1회 내외국인 ⇨ 격리(자가격리앱 설치) ⇨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 예방접종증명서 ⇨ 격리 유지(입국후 10일간 격리) ▶ **격리면제서 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외국인** : 입국 후 1일차, 6-7일차 PCR검사 실시, 등록 즉시 확진자 밀접접촉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 **격리면제서 미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외국인** :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등록 즉시 확진자 밀접접촉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되나, 격리면제서가 없기 때문에 입국 후 10일간 격리는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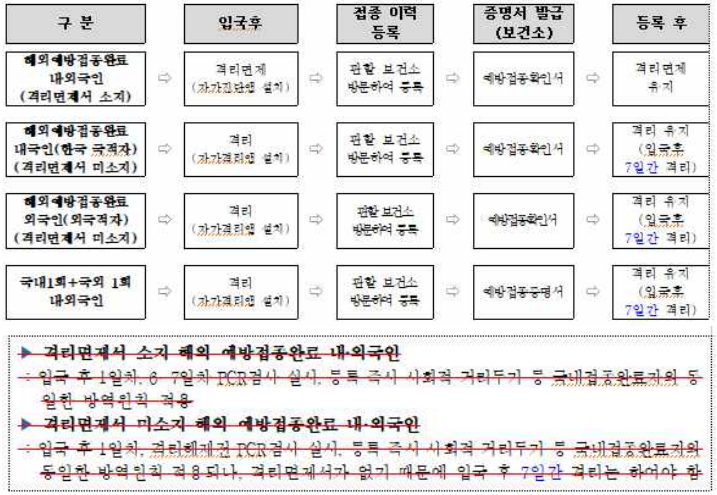 구 분 / 입국후 / 접종 이력 등록 / 증명서 발급(보건소) / 등록 후 해외예방접종완료 내외국인(격리면제서 소지) ⇨ 격리면제(자가진단앱 설치) ⇨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 예방접종확인서 ⇨ 격리면제 유지 해외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격리면제서 미소지) ⇨ 격리(자가격리앱 설치) ⇨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 예방접종확인서 ⇨ 격리 유지(입국후 7일간 격리) 해외예방접종완료 외국인(외국적자)(격리면제서 미소지) ⇨ 격리(자가격리앱 설치) ⇨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 예방접종확인서 ⇨ 격리 유지(입국후 7일간 격리) 국내1회+국외 1회 내외국인 ⇨ 격리(자가격리앱 설치) ⇨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 예방접종증명서 ⇨ 격리 유지(입국후 7일간 격리) ▶ ~~**격리면제서 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외국인**~~ ~~: 입국 후 1일차, 6-7일차 PCR검사 실시, 등록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 ~~**격리면제서 미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외국인**~~ ~~: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등록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되나, 격리면제서가 없기 때문에 입국 후 7일간 격리는 하여야 함~~	
23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무증상자 구분 / PCR 음성확인서 /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 격리 / 추가검사 격리 면제서 제출 ⇨ 제출(적합) ⇨ 임시생활시설 ⇨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자가진단앱 설치) ⇨ 6~7일차 진단검사 실시(보건소) 격리 면제서 제출 ⇨ 미제출(외국인 입국불허) ⇨ 임시생활시설 ⇨ 시설격리 5일(5일 입소비용 본인부담) + 자가격리 5일 ⇨ 격리해제전 검사(보건소)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무증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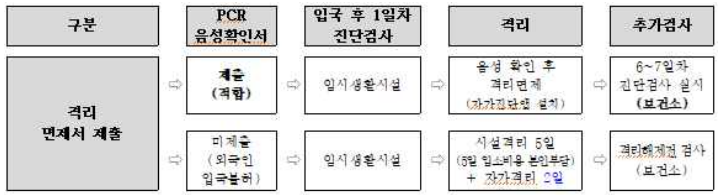 구분 / PCR 음성확인서 /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 격리 / 추가검사 격리 면제서 제출 ⇨ 제출(적합) ⇨ 임시생활시설 ⇨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자가진단앱 설치) ⇨ 6~7일차 진단검사 실시(보건소) 격리 면제서 제출 ⇨ 미제출(외국인 입국불허) ⇨ 임시생활시설 ⇨ 시설격리 5일(5일 입소비용 본인부담) + 자가격리 2일 ⇨ 격리해제전 검사(보건소)	〈해외출입국관리팀〉 격리기간 단축(10일->7일)
25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 라. 격리면제자의 자가/시설격리 전환(무증상자만 해당) 1)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기간은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최대 10일까지(재외공관에 격리면제서 발급시 격리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 라. 격리면제자의 자가/시설격리 전환(무증상자만 해당) 1)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기간은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최대 7일까지(재외공관에 격리면제서 발급시 격리면	격리기간 단축(10일->7일)에 따라 변경하였으나, 중수본 해외입국관리팀 소관으로 담당팀 확인 필요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면제 기간 기재) 2) 격리대상 신고 및 자가/시설격리 전환 ○ 격리면제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격리면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대상자는 즉시 출국 또는 즉시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동 면제서에 기재된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자차 등 별도 이도수단 이용, 대중교통 이용 불가), 격리대상임을 신고 ○ 관할 보건소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대상자,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대상자로 전환하고, 격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입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전까지 자가/시설 격리 및 능동감시 ▶ (예시) 9.1.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5일까지이고 9.6일 즉시 출국하지 않는 경우, 9.5일 이전까지 보건소에 신고하고 9.6~11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제 기간 기재) 2) 격리대상 신고 및 자가/시설격리 전환 ○ 격리면제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격리면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대상자는 즉시 출국 또는 즉시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동 면제서에 기재된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자차 등 별도 이도수단 이용, 대중교통 이용 불가), 격리대상임을 신고 ○ 관할 보건소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대상자,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대상자로 전환하고, 격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입국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자가/시설 격리 및 능동감시 ▶ (예시) 9.1.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5일까지이고 9.6일 즉시 출국하지 않는 경우, 9.5일 이전까지 보건소에 신고하고 9.6~8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28	6. 진단검사 ▶ 해외 입국자 검사 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비고란 "조사대상 유증상자 2"로 신고하고 확진검사결과 표기 ○ 지자체에서 필요시 해외입국자에 대한 추가검사 시행 권고	6. 진단검사 (삭제) ○ 지자체에서 필요시 해외입국자에 대한 추가검사 시행 가능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29 ~ 88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전면개정)	(지침관리팀)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전면 개정(순서변경)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순서변경) 나. 생활치료센터 및 병상 배정 원칙 ○ 확진자 코로나19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배정 원칙을 우선 적용함. 단, 중증 병상 가동 상황에 따라	**1. 확진환자 관리** **가. 격리 통보** ○ **(보건소)** 확진환자로 인지되 즉시 격리통지를 실시하고(격리통지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격리통지서를 문자 등으로 통보(환자가 문서로 요청 시 서면 격리통지서 발급) ▶ 거주지로 이동 후 확진된 경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 - 확진환자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격리통지 실시**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보건소는 매일 이관된 현황 확인하여 격리조치, 가족 동거인 여부 확인) ○ 초기 분류는 확진자 조사서와 선별 질문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 환자관리반이 아래의 입원 고려 위험요인을 참고하여 분류 관련서식 [서식 3] 입원 격리 통지서 / [서식 4] 격리통지서 수령증 / [서식 7] 코로나19 사례관리보고서(확진환자) **나. 환자 초기 분류** ○ **초기 분류**는 확진 후 신속하게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증상 및 위험요인을 파악**해 **치료 순위**를 정하고, 한정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택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선별하여 분류하는 것을 말함 **[확진자의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 ▶ 시·도 환자관리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증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가능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기저질환 또는 동반된 신체적 문제로 시급한 처치 및 치료를 요하는 경우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용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 심장질환/ 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 재택 환자의 격리기간 모니터링은 상기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모니터링하고, 병상 배정이 필요한 경우 병상 배정 절차에 따름	〈수도권현장대응팀〉 확진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병상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증상의 중증도뿐만 아니라 동반된 기저질환

<table>
<tr><th>쪽</th><th>현행(10-3판)</th><th>1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
<td></td>
<td>
중증 환자라도 치료 및 처치 요구도가 낮을 경우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배정될 수 있음
- (무증상·경증) 거주요인 등에 따라 재택이 불가능할 경우 생활치료센터 배정
- (중등도) 감염병 전담병원
- (중증 이상) 중환자 치료가능 병상▶에 배정
<코로나19 중증도 분류 기준>
<table>
<tr><th>단계</th><th>정의</th><th>현행 중증도 분류</th></tr>
<tr><td>1</td><td>일상생활 지장 없음
(no limit of activity)</td><td rowspan="2">경증이하</td></tr>
<tr><td>2</td><td>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limit of activity but No O2)</td></tr>
<tr><td>3</td><td>비관산소치료
(O2 with nasal prong)</td><td rowspan="2">중등증</td></tr>
<tr><td>4</td><td>산소마스크(O2 with facial mask)</td></tr>
<tr><td>5</td><td>비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산소요법
(non-invasive ventilation/high flow O2)</td><td rowspan="3">위중증</td></tr>
<tr><td>6</td><td>침습인공호흡기
(invasive ventilation)</td></tr>
<tr><td>7</td><td>다기관손상/에크모/CRRT
(multi-organ failure/ECMO/CRRT)</td></tr>
<tr><td>8</td><td>사망(death)</td><td>사망</td></tr>
</table>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중환자용) 등
</td>
<td>
다. 병상 배정 원칙
○ 확진자의 중증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병상 배정 원칙을 적용하되,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외에 동반된 기저질환 및 신체적 문제의 중증도와 긴급성(예. 응급 분만, 급성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중증 외상, 응급 수술, 위장관 출혈 등)을 고려하여 병상을 배정함
- (무증상·경증) 거주요인 등에 따라 재택이 불가능할 경우 생활치료센터 배정
- (중등증) 감염병 전담병원
- (중증 이상) 중환자 치료가능 병상▶에 배정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
<table>
<tr><th>단계</th><th>정의</th><th>중증도 분류</th></tr>
<tr><td>1</td><td>일상생활 지장 없음
(no limit of activity)</td><td rowspan="2">경증 이하</td></tr>
<tr><td>2</td><td>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limit of activity but No O2)</td></tr>
<tr><td>3</td><td>비관산소치료
(O2 with nasal prong)</td><td rowspan="2">중등증</td></tr>
<tr><td>4</td><td>산소마스크(O2 with facial mask)</td></tr>
<tr><td>5</td><td>비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산소요법
(non-invasive ventilation/high flow O2)</td><td rowspan="3">위중증</td></tr>
<tr><td>6</td><td>침습인공호흡기
(invasive ventilation)</td></tr>
<tr><td>7</td><td>다기관손상/에크모/CRRT
(multi-organ failure/ECMO/CRRT)</td></tr>
<tr><td>8</td><td>사망(death)</td><td>사망</td></tr>
</table>
</td>
<td>
또는 신체적 문제의 중증도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실제 병상 배정도 이를 감안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

〈수도권현장대응팀〉
확진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병상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증상의 중증도뿐만 아니라 동반된 기저질환 또는 신체적 문제의 중증도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실제 병상 배정도 이를 감안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
또한, 코로나19 이외의 문제로 입원한 경우 입원 사유가 해소되거나 격리 해제 시에는 코로나 병상이 아닌 일반 병상으로 전원·전실을 유도하는 한편, 격리 해제 기준을 고려한 최대 재원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코로나 병상의 효율적인 활용 도모

(지침관리팀)
</td>
</tr>
</table>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병상 배정 시에는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뿐만 아니라 동반된 기저질환 및 신체적 문제의 중증도와 긴급성(예. 응급 분만, 급성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중증 외상, 응급 수술, 위장관 출혈 등)을 고려함. 다만, 코로나19 증상 외의 사유로 병상을 배정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거나 격리가 해제되는 즉시 전원·전실 조치하도록 함(재원기간 최대 7일)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전면 개정(순서변경)
	(신설)	**라.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마. 생활치료센터 입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입소)** 환자 입소 전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역학조사서 등) 및 시·도 환자관리반을 통해 환자의 기본정보 사전 파악 ▶ (기본정보) 입소 전 환자의 기본정보를 진료지원시스템에 입력하고, 배치된 환자의 기본정보를 환자관리시스템에서 불러와 입소일을 입력할 것 - 환자관리 명부가 필요할 경우, 환자 배치반에서 송부한 엑셀 명부, 진료지원시스템 입력자료 혹은 환자관리시스템 확진자 배치정보에 입소일 추가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엑셀 내보내기) ▶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의 80%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개발한 비대면진료지원 시스템을 사용 중이고, 이외는 협력의료기관 사용 시스템 활용 - 향후 환자관리정보시스템의 확진환자 배치정보를 진료지원시스템에 연계하는 등 시스템 사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 - **(입소 이동수단)**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구급차 등 또는 개인차량(본인·동거가족 운전) 및 방역(일반)택시 이용 가능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해당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❶ (환자 잔소여부 등 관리) 보건소 및 생활치료센터는 개인차량 등 이용시 유의사항 및 이동 동선에 대한 사전 안내와 실제 잔소여부 확인 필요 ❷ (개인차량 및 택시 이용시 유의사항) 비응급 상황이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정, 운전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운전자 및 환자 외 탑승자제(환자는 뒷좌석 대각선에 착석)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 퇴소기준 변경 및 입퇴소 이동수단 변경사항 반영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 퇴소기준 변경 및 입퇴소 이동수단 변경사항 반영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및 장갑 착용, 환자 뒷좌석 대각선에 착석, 신체접촉 및 차내 음식섭취 금지, 하차 후 차내 · 외 표면소독, 운전시 창문개방, 격리장소 외 경유 또는 하차금지 ▶ 개인차량, 방역택시 등 확보가 불가한 경우, 일반 택시 탑승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나,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제한함 ▶ 운전자 예방접종완료 여부 기준 등 관련사항은 "**V. 확진환자 대응방안 → 3-1. 접촉자 조사 및 관리 → 다. 관리사항 →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참고 ○ **(퇴소)**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 날에 격리해제 및 퇴소 ▶ (예시) 10월 1일 확진된 경우, 10월 8일에 격리 해제 *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의료진 재판단 - 퇴소(격리해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자가격리가 어려운 노숙인, 집단생활을 하는 외국인, 고시원 · 쪽방 · 기숙사 거주자 등 증가된 위험군은 3일 추가 외출금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 여부 기준 등 관련사항은 "**V. 확진환자 대응방안 → 2. 확진환자 격리해제**" 참고 - **(시스템)**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시설 격리 후 퇴소 시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는 자가격리 전원으로 입력하고, 진료지원시스템에는 환자상태를 퇴소로 입력 ❶ (퇴소안내문 등) 퇴소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퇴소안내문,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등을 출력하여 안내 참고자료 [부록 35] 생활치료센터 퇴소 안내문 예시(추가 자가격리 대상자용) 참고자료 [부록 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단, "자가격리자 외출보호앱" 설치의무 없음) 참고자료 [부록 4]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❷ (위생용품) 자가격리 전환기간 중 사용할 수 있도록 잔여 위생용품(소독용품, 마스크 등) 지참하여 퇴소하도록 안내 ❸ (퇴소 이동수단) 제한 없음, 개인차량(본인·동거가족 운전) 및 방역택시 우선 이용 권고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 퇴소기준 변경 및 입퇴소 이동수단 변경사항 반영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2. 확진환자 격리해제 **가.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순서변경)	- **(증상 악화 시)** 관할 보건소에 환자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초과 격리 또는 병원 전원 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입원·격리 명령 변경 요청 ▶ 격리해제(퇴소) 기준 및 관련사항은 "V. 확진환자 대응방안 → 2. 확진환자 격리해제" 참고 **[증상 악화 시 격리 기간 연장 또는 병원 전원 대응방법]** ▶ **격리명령의 변경은 지자체 소관**이며 일반적으로 지자체 보건소 분장업무이므로, 시설에서 보건소에 전원 발생 사실을 전달한 경우 지자체 내부에서 해당 지자체의 격리명령 담당자에게 변경 필요사항 전달 ▶ **검체채취일 기준 7일 초과 격리 시설 입소 환자** - (격리기간 연장) 격리기간 중 증상 발생 및 건강의 경미한 악화 등 ▶ **병원 전원이 필요한 시설 입소 환자** ○ **(전원 요건)** 입원을 요하는 환자 - 체온이 37.8도 이상이거나 호흡곤란이 있는 등 vital sign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전원 요청)** 격리기간 중 증상 악화 시 시설 건강관리책임자(담당의료진)가 연계된 협력 의료기관에 환자를 이송하되, 연계된 협력 의료기관의 병상 부족 시 실거주지 관할 시·도 환자관리반을 통해 병상 배정 요청 - ①(지자체 내) 시·도 환자관리반은 수용가능한 의료기관 연계 - ②(지자체 간) 지자체 내 수용가능한 의료기관 연계 어려울 경우 시·도 환자관리반은 권역 내 타 지자체 시·도 환자관리반과 협의하여 수용가능한 의료기관 연계 ○ **(시스템)**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병원 전원으로 입력하고, 진료지원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환자 상태를 지정 병원 이송으로 입력 ○ **(이송 유의사항)** 관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배치된 구급차로 이송 조치 - 환자 이송 시 환자의 배치 관할 지자체가 시설 관할 지자체와 상이할 경우, 각 지자체, 시·도 환자관리반, 생활치료센터,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관련 기관의 협업·조정 하에 신속한 이송 필요 - 협력 의료기관 또는 전원 병원에 전달이 필요한 자료는 추가 감염방지를 위해 지퍼백 등에 담아 반드시 동행자가 지참하여 전달할 필요 - 이송 시 환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유지 **나.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위중증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 **(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최소 10일 경과, 최대 20일▸까지 적용(20일 경과 시 격리해제)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임상증상 호전 기준(기저질환자)** - 기저질환(증상)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또는 인공호흡기 등 생명연장 치료가 안정적일 때, 호전으로 판단 가능 ▶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 시 증상 기준과 관계없이 격리해제함**	〈환자관리팀〉 격리기간 기산일 변경(검체채취일) 및 격리기간 단축(10→증상 유무 및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검사기반 격리해제 안내의 본문 내 위치 조정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2. 확진환자 격리해제 **가.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 ○ **(기간)**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7. 24:00 격리해제 가능 ▶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 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8. 24:00 격리해제 가능 ▶ **임상증상 호전 기준(기저질환자)** - 기저질환(증상)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호전으로 판단 가능 ▸▸ 격리해제 후 **3일간 추역 권고**: 출근 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및 행동 기준(예)** ○(**시설**) 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식사, 음주, 음료, 목욕 등) 실내, ② 자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 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④ 미접종 연령군(17세 이하) 다빈도 이용시설 ○(**행동**) ①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함성 등), ② 장시간 실내 체류 ▶ **감염 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감염 시 사망위험이 높은 환자·입소자에 대한 면회, 노인·장애인 등 고위험군의 여가 및 생활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 ▶ (예시)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8. 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 24:00 이후 격리해제 가능 ◆ **참고**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격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검사기반 기준 적용 가능 ※ 검사 기반 격리해제 기준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 미발생 또는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검사기반 기준 적용 시 검사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임상경과 기반 기준은 환자의 타 질환 임상 경과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함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3. 역학조사 **[역학조사 관련 용어]** **용어 / 정의** **감시** /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 **역학조사** /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잠복기** / 바이러스 등 병원체에 노출되어 증상 발현까지 걸리는 시간 **전파가능기간** / 환자가 바이러스 등 병원체를 배출하여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기간 **세대기** / 환자로부터 새로운 환자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유행곡선** / 시간에 따른 발생 상황을 그래프로 시각화한 그림 **전향적 접촉자 조사** / 환자의 접촉자를 찾아내고 감시·격리하여 감염 사슬을 차단하는 활동 **후향적 접촉자 조사** / 환자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공동노출자를 찾아내고 감시·격리하여 감염 사슬을 차단하는 활동 **지표환자** / 집단감염 사례에서 가장 먼저 인지된 확진자(확진일이 가장 빠른 환자) **선행확진자** / 환자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확진자(확진일이 앞선 환자) **근원환자** / 집단감염의 원인(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확진자(증상발생일이 가장 빠른 환자) **능동감시** / 관할 보건소에서 1:1 담당자를 지정하여 감시 기간 동안 접촉자(또는 해외입국자)의 증상 발생 유무를 일일 2회 확인·관리하는 조치 **수동감시** / 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촉자(또는 해외입국자)가 발열, 호흡기증상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감시를 받도록 하는 조치 **[확진환자 대응절차]** **사례구분** / **확진환자 발생 시** / **추가환자 발생 시** 조사대상 / 확진환자 ⇒ 접촉자 또는 자가격리자 중 확진된 자 ❶ 상황평가 / · 발생·노출규모 파악 / · 집단사례 여부 결정 · 타지역 상황 공유 ❷ 기초조사 및 등록 / · 기초역학조사 실시 · 시스템 등록 / · (집단)사례조사 실시 · 시스템 등록 ❸ 접촉자조사 및 등록 / · 접촉자조사 실시 · 시스템 등록 · 이동동선조사 (GPS/카드정보/CCTV/DUR 등) / · 선행확진자 지정 · 시스템 등록 · 이동동선조사 (GPS/카드정보/CCTV/DUR 등) ❹ 심층조사 / · 심층역학조사 실시 · 후향적 접촉자 조사(감염원 조사) / · 심층역학조사 실시 · 후향적 접촉자 조사(감염원 조사) ❺ 결과보고 / · 심층역학조사서 시스템 등록 / · 집단사례조사서 시스템 등록		〈역학조사팀〉 전체 글씨크기 축소 굵은글씨 해제 능동감시, 수동감시 정의 보완 〈역학조사팀〉 역학조사 중 이동동선조사, 심층역학조사, 후향적 접촉자 조사에 대하여 필요시 문구 추가 심층조사 삭제

<table>
<tr><th>쪽</th><th>현행(10-3판)</th><th>1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
<td></td>
<td>

[주체별 역학조사 관련 역할 및 책임]

<table>
<tr><th>구분</th><th>권역센터</th><th>중앙방역대책본부</th></tr>
<tr><td>역할</td><td>시·도 역학조사 지원
-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에 대한 직접 조사
- 권역단위 기획조사 계획수립 및 시행
- 합동 위험도 평가, 관리계획 마련
- 감염원 조사/대응 지원</td><td>권역/시·도 역학조사 지원
-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에 대한 직접 조사
- 대응전략 마련 및 추진체계 구축지원
- 합동 위험도 평가, 관리계획 마련
- 권역 간 정보 공유체계 마련
- 기획역학조사 체계 마련</td></tr>
<tr><td>권한 및 책임</td><td colspan="2">중앙역학조사반원*으로 활동
- (방역관) 「감염병예방법」 제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 권한을 가짐
- (역학조사관) 방역관의 지휘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td></tr>
<tr><td></td><td>※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른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등에 대한 사항은 권역-지역 합동 의사결정체계에서 논의·조정하되,
① 단일 지역 대규모 발생 시, 시·도 방역관 책임하에 방역조치 결정 및 후속조치
② 2개 이상 시도 발생 시, 권역 방역관은 주요사항에 대해 조정, 각 시도는 시도 방역관 책임 하에 세부 방역조치 결정 및 후속조치</td><td>※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른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등에 대한 사항은 중앙-권역-지역 합동 의사결정체계에서 논의·조정하되,
① 단일 권역 발생 시, 권역 단위 의사결정 체계에 따름
② 2개 이상 권역 발생 시, 중앙 방역관의 주요사항에 대해 조정하고, 후속조치 사항은 권역 단위 의사결정체계에 따름</td></tr>
<tr><td>지원 및 조치</td><td>1. 지자체 단독수행이 불가능하여 시·도의 현장 대응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예)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내 유행
2.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사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권역센터장 또는 방역관(감염병대응과장)이 초기에 선제적인 합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도와 협의 후 지원
4. 기타 시·도가 요청하는 경우</td><td>1. 권역센터 단독수행이 불가능하여 센터의 현장 대응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2. 2개 이상 권역에 걸쳐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사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단장 및 팀장이 초기에 선제적인 합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권역과 협의 후 지원
4. 기타 권역에서 요청하는 경우</td></tr>
<tr><td>규모</td><td>(초기 대응·평가) 역학조사관 1명 이상
(필요 시) 방역관 등 파견 범위 확대</td><td>현장 위험평가에 따라 조정</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중앙·권역대응센터</th><th>시·도</th><th>시·군·구</th><th>기타 협력기관</th></tr>
<tr><td>역할</td><td>(권역)상황 총괄</td><td>- 지역 역학조사 지원 및 조사 인력 운영,
- 지역 병상·의료인력 조정, 방역시설 점검·관리 등</td><td>- 기초·신종역학조사 실시 및 보고
- 접촉자명단 확보, 환자·접촉자관리, 시설 방역 등</td><td>- 자문, 감염교육 등</td></tr>
<tr><td>담당 인력</td><td>방역관
역학조사관
행정인력</td><td>방역관
역학조사관
행정인력</td><td>방역관
역학조사관
행정인력</td><td>감염 전문의
역학·통계 전문가
봉사단체 등</td></tr>
</table>

</td>
<td>

3.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조사 관련 용어]

<table>
<tr><th>용어</th><th>정의</th></tr>
<tr><td>감시</td><td>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재해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td></tr>
<tr><td>역학조사</td><td>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td></tr>
<tr><td>잠복기</td><td>바이러스 등 병원체에 노출되어 증상 발현까지 걸리는 시간</td></tr>
<tr><td>전파가능기간</td><td>환자가 바이러스 등 병원체를 배출하여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기간</td></tr>
<tr><td>세대기</td><td>환자로부터 새로운 환자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td></tr>
<tr><td>유행곡선</td><td>시간에 따른 발생 상황을 그래프로 시각화한 그림</td></tr>
<tr><td>전향적 접촉자 조사</td><td>환자의 접촉자를 찾아내고 감시·격리하며 감염 사슬을 차단하는 활동</td></tr>
<tr><td>후향적 접촉자 조사</td><td>환자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공동노출자를 찾아내고 감시·격리하며 감염 사슬을 차단하는 활동</td></tr>
<tr><td>지표환자</td><td>집단감염 사례에서 가장 먼저 인지된 확진자(확진일이 가장 빠른 환자)</td></tr>
<tr><td>선행확진자</td><td>환자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확진자(확진일이 앞선 환자)</td></tr>
<tr><td>근원환자</td><td>집단감염의 원인(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확진자(증상발생일이 가장 빠른 환자)</td></tr>
<tr><td>능동감시</td><td>접촉자 중 격리자 보다 감염 및 전파위험도가 낮게 평가된 접촉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보건소에서 1:1 담당자를 지정하여 감시 기간 동안 대상자(또는 해외입국자)의 증상 발생, 유무를 일일 2회 확인·관리하는 조치</td></tr>
<tr><td>수동감시</td><td>접촉자 중 격리자 및 능동감시 대상자 보다 감염 및 전파위험도가 낮게 평가된 접촉자를 대상으로 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대상자(또는 해외입국자)가 발열, 호흡기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스스로 감시를 받도록 하는 조치</td></tr>
</table>

[확진환자 대응절차]

</td>
<td></td>
</tr>
</table>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가. 목적 및 대상

○ **(목적)**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시 감염원 및 감염경로 등 전파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

○ **(대상)**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신고된 자*

▶ 필요시 신고 전이라도 역학조사 실시 가능

나. 근거 및 주체

○ **「감염병예방법」 제18조**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안의 감염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가능

○ **최초 인지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실시*

▶ 2개 이상 시·도가 관여되었을 경우 환자 및 접촉자 명단 등 정보를 신속히 공유

▶ 환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이 타 기관의 관할인 경우, 시·군·구 또는 시·도간 협의에 의하여 조사 수행

▶ 협조요청 받아 실시한 경우, 그 결과 보고는 시·군·구 상호 간 협의 후 적시에 보고

라. 방법 및 내용

▶ **역학조사 사전 준비 사항**

① 역학조사 실시할 시설정보(도면, 공조시설, CCTV 유무 등) 및 직원명단(교대인력 등 현황) 확보

② 확진환자 기초역학조사서

③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타 지자체 공문 등 행정사항

④ CCTV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도가 해당시설에 공문 요청(인체물로 준비 등)

[주체별 조사 관련 역할 및 책임]

구분	권역센터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할	**시·도 조사 지원** -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에 대한 직접 조사 - 권역단위 기획조사 계획수립 및 시행 - 합동 위험도 평가, 관리계획마련 - 감염원 조사/대응 지원	**권역/시·도 조사 지원** -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에 대한 직접 조사 - 대응전략 마련 및 추진체계 구축지원 - 합동 위험도 평가, 관리계획 마련 - 권역 간 정보 공유체계 마련 - 기획조사 체계 마련
권한 및 책임	**중앙역학조사반원*으로 활동** - **(방역관)** 「감염병예방법」 제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 권한을 가짐 - **(역학조사관)** 방역관의 지휘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	
	※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른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등에 대한 사항은 **권역-시역 합동의사결정체계**에서 논의·조정하되, ① 단일 지역 대규모 발생 시, 시·도 방역관 책임하에 방역조치 결정 및 후속조치 ② 2개 이상 시도 발생 시, 권역 방역관은 주요사항에 대해 조정, 각 시도는 시도 방역관 책임 하에 세부 방역조치 결정 및 후속조치	※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른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등에 대한 사항은 **중앙-권역-시역 합동의사결정체계**에서 논의·조정하되, ① 단일 권역 발생 시, 권역 단위 의사결정 체계에 따름 ② 2개 이상 권역 발생 시, 중앙 방역관의 주요사항에 대해 조정하고, 후속조치 사항은 권역 단위 의사결정체계에 따름
지원 절차	1. 지자체 단독수행이 불가능하여 시·도의 현장 대응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예)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내 유행 2.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사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권역센터장 또는 방역관(감염병대응과장)이 초기에 선제적인 합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도와 협의 후 지원 4. 기타 시·도가 요청하는 경우	1. 권역센터 단독수행이 불가능하여 센터의 현장 대응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2. 2개 이상 권역에 걸쳐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사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단장 및 팀장이 초기에 선제적인 합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권역과 협의 후 지원 4. 기타 권역에서 요청하는 경우
규모	(초기 대응 평가) 역학조사관 1명 이상 (필요 시) 방역관 등 파견 범위 확대	현장 위험평가에 따라 조정

구분	중앙-권역대응센터	시·도	시·군·구	기타 협력기관
역할	(권역)상황 총괄	- 지역 조사 지원 및 조사 인력 운영, - 지역 병상·의료인력 조정, 방역시설 점검 관리 등	- 조사 실시 및 보고 - 접촉자명단 확보, 환자 접촉자관리, 시설 방역 등	- 자문, 감염교육 등
담당 인력	방역관 역학조사관 행정인력	방역관 역학조사관 행정인력	방역관 역학조사관 행정인력	감염 전문의 역학·통계 전문가 봉사단체 등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짐을 환자 및 관련자(시설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 관련서식 [서식 5]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및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양식을 이용하여 환자, 보호자, 접촉자 및 담당의사 등 전화 및 대면조사 등 역학조사 실시 관련서식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 환경조사(시설, 업무형태 등) 및 환경검체 채취, 역학조사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등 실시 **마. 공항 및 항만 입국 검역대응 단계에서의 확진환자 역학조사 등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 대응지침」 참조 ○ **(확진자 발생 보고)** 최초 인지한 검역소는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 검역정책과, 권역센터 감염병대응과)으로 확진자 발생 상황 메모보고 ▶ 건강상태질문서, 기초역학조사서 첨부 ○ **(확자 발생 통보)** 검역소는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확진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에 확자 발생 통보(접촉자는 공문 통보) ▶ 외국인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내국인의 경우, 병원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가 역학조사 실시 ○ **(확진자 역학조사)** 확진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는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확진환자의 발생을 인지(통보받은) 후, 이 지침에 따라 역학조사 실시 ▶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서식 23]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확진환자)를 최초 인지 후 각각 24시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첨부 ○ **(해외입국 격리면제 확진자 분류)** 입국 후 최장잠복기 이내 국내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감염경로를 "미분류"가 아닌 "해외입국"으로 분류	**가. 목적 및 대상** ○ (목적)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시 전파 차단·확산 방지 및 고위험군 피해 최소화 ○ (대상)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신고된 자▶ ▶ 필요시 신고 전이라도 역학조사 실시 가능 **나. 근거 및 주체** ○ **「감염병예방법」 제18조**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안의 감염병 발생**에 대한 조사 실시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실시▶ ▶ 2개 이상 시·도가 관여되었을 경우 환자 및 접촉자 명단 등 정보를 신속히 공유 ▶ 환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이 타 기관의 관할인 경우, 시·군·구 또는 시·도간 협의에 의하여 조사 수행 ▶ 협조요청 받아 실시한 경우, 그 결과 보고는 시·군·구 상호 간 협의 후 적시에 보고 **라. 방법 및 내용** ○ 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짐을 환자 및 관련자(시설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 관련서식 [서식 5]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및 확진자 조사서 양식을 이용하여 환자, 보호자, 접촉자 및 담당의사 등 전화, 자기기입식 조사 등 실시 관련서식 [서식 6]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 자기기입식 조사(22.2.7.이후) ▶ 자기기입이 곤란한 대상(유·소아·청소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은 기존 방식으로 조사 실시 ▶ **조사 주요 내용** ① **확진자의 인적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거주지 주소, 연락처,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등 ② **증상** : 증상, 증상발생일, 예방접종 등 ③ **가족(동거인) 접촉자** : 가족(동거인) 접촉자, 가족(동거인) 접촉자의 예방접종력 ○ **실거주지 보건소**는 조사 후 그 조사 결과를 시·도 및 질병관리청으로 지체없이 보고▶ **[조사 실시 후 보고]**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 역학조사 →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를 통해 보고 관련서식 [서식 6]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 필요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단계별로 감염원 조사 시행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마. 공항 및 항만 입국 검역대응 단계에서의 확진환자 역학조사·등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 대응지침」 참조 ○ **(확진자 발생 보고)** 최초 인지한 검역소는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 검역정책과, 권역센터 감염병대응과)으로 확진자 발생 상황 메모보고 ▶ 건강상태질문서, 확진자 조사서 첨부 ○ **(환자 발생 통보)** 검역소는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확진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에 환자 발생 통보(접촉자는 공문 통보) ▶ 외국인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내국인의 경우, 병원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가 역학조사 실시 ○ **(확진자 역학조사)** 확진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는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확진환자의 발생을 인지(통보받은) 후, 이 지침에 따라 역학조사 실시 ▶ [서식 6]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를 접수 또는 이관 확인 후 24시간 이내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에 입력 및 첨부 관련서식: [서식 3] 입원·격리 통지서, [서식 5]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서식 6]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교통수단: -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 -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 환자와 전후좌우 2칸 이내에서 15분 이상 앉아있었던 자와 환자와 직접 접촉한 직원 (예: 기차 또는 항공기 승무원)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3-1. 접촉자 조사 및 관리 **가. 개요** ○ **(조사)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해외입국시는 검역소)는 접촉자 조사 실시 - **(대상)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조사 ▶ 감염취약시설 3종: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 지자체 대응 여건에 따라 기타 시설 조사 포함 가능 관련서식 [서식 9]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양식 - **(실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접수 또는 이관 확인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3종 접촉자를 우선 파악하고 명단을 작성하여 자가격리 조치 시행. - **(조사기간)** 확진자가 유증상일 경우 증상발생일 2일 전부터 확진 시까지 접촉자를 조사하고, 유증상자 확진일이 증상발생 후 5일이 경과한 경우 5일까지 조사, 무증상일 경우에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 시까지 접촉자를 조사 ※ 감염원은 필요시 조사 ○ **(등록·관리)**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시스템에 접촉자 명단 등록 및 관리 - 단, 검역소 및 정부 지정 임시생활시설에서 확인된 확진자의 접촉자는 확진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촉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 이관 ※ 접촉자에 대한 격리통보는 이관받은 보건소가 수행 ▶ **명단 등록 메뉴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환자관리 → 접촉자관리 → 접촉자관리'**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명단 등록 시 주의사항** : 각 사례에 대해 접촉한 확진환자 이름과 접촉 상황 설명 추가 : 타 보건소로 이관할 경우 이관날짜를 이관일 다음날로 설정하고, 관할보건소는 반드시 접촉자의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지정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격리통지서 발급 관련서식 [서식 3] 입원·격리 통지서 ○ **(외국인 조사·관리)** 외국인 노출자(접촉자) 관련 조사 및 접촉자 관리 - 외국인 노출자(접촉자) 관련 집단발생 시 지자체에서는 관계부처(여가부, 노동부, 법무부) 외국인 지원 콜센터 해당 언어 직통번호 등 파악 후 조사에 활용 참고자료 [부록 24] 외국인 통역지원 콜센터 언어별 직통번호 - 외국인 노출자(접촉자) 대상 조사는 '(부록 25. 외국인 확진자 조사서 작성 원칙)'을 참고하여 조사 관련 서식 3, 5, 6 활용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나. 관리사항 1) 접촉자 구분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접수 또는 이관 확인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확진환자와의 노출범위(시간, 장소 등) 및 마스크 착용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여 접촉자 구분 2) 접촉자 관리 ○ **(분류)** 접촉자는 **자가·시설격리, 수동감시**로 분류하여 관리 - 보건소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의 감염 위험도 평가 후 분류·관리 ▶ 접촉자 분류 기본 원칙 - **(본인 진술 기반)** 확진자와 2미터 이내에서 15분 정도 접촉한 상황에서 적절한 보호구(KF80 이상 마스크) 착용 시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음 - 자기기입식 조사에서 확진자가 입력한 접촉자 정보 활용(추후 안내) ○ **(안내)**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격리통지서 사본을 **문자 등으로 통보하거나 유선으로 안내**하되 빠른 시일 내에 **격리통지서 전달**▸ ▶ 근거 :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관리방안은 아래 참조 ▶ "V. 확진환자 대응방안 → 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적용 ○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역학조사반)의 **감염위험도 판단**에 따라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사 시행을 결정할 수 있음 -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면서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능동 및 수동감시)은 접촉자 분류 시, 감시해제 전(6~7일차) 검사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 **(용어정의)** "예방접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예방접종자 구분 ① **1차 접종자** : 1차 접종을 한 자 ② **1차 접종완료자** :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③ **2차 접종자** : 2차 접종을 한 자 ④ **2차 접종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접종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인 자 ⑤ **3차 접종자** : 3차 접종을 한 자, 2차 접종 완료 전후 코로나19 감염력이 인정된 자 ⑥ **3차 접종완료자** : 3차 접종을 한 후 14일이 경과한 자 ▶ 단, 접종증명의 효력은 3차 접종 후 즉시 인정됨 ▶ (2차 접종완료자 예시) 5.1일 2차 접종을 받은 경우, 5.16일(14일 경과) 0시부터 접종일 이후 10.28일 (180일 경과) 24시까지 ▶ (6개월 경과 계산) 1개월을 30일로 단순 계산 -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경우 향후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면,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협약 작성이나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사전협의 필요 참고자료 [부록 28] 예방접종력 확인 방법 ○ **(원칙)** 격리조치 및 수동감시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실시 가능 ▶ **격리조치 및 수동감시 대상자** **구분** / **대상자** 수동감시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접종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자 수동감시 / 3차 접종자, 2차 접종 완료 전후 코로나19 감염력이 인정된 자 격리조치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격리조치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 개별격리 불가능할 경우,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 단, 지자체 방역관은 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및 지역사회 발생 규모 고려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로 조정 가능 ▶ **수동감시 예외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름 - 수동감시 실시 중에는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준수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3-2.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역학조사 **[집단시설 역학조사 대응절차]** **집단유형 / 가족/시인 / 다중이용시설 / 의료기관/요양시설** **조사대상** / 자택, 가족·지인모임 / 학교, 사업장(콜센터 등), 교회, 백화점, 군부대, 대형놀이시설 등 / 종합병원, 병·의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역학조사** / ❶ 상황 평가 ❷ 발생경위/발생현황파악 (지역별, 시설별) ❸ 시설/감시현황 파악 ❹ 시설위험도 평가 / ❶ 상황 평가 ❷ 발생경위/발생현황파악 (지역별, 시설별) ❸ 시설/감시현황 파악 ❹ 시설위험도 평가 / ❶ 상황 평가 ❷ 발생경위/발생현황파악 (지역별, 시설별) ❸ 시설/감시현황 파악 ❹ 시설위험도 평가 **조치** / ❺ 노출자 조치계획 수립 - 자가(자택) 격리 / ❺ 노출자 조치계획 수립 - 자가(자택) 격리 - 감시(검사) 방법 결정 - 일부 또는 전부 폐쇄 / ❺ 노출자 조치계획 수립 - 병원격리/ 시설격리 - 전수검사/ 선제적검사 - 일부 또는 전부 폐쇄 **보고** / ❻ 집단사례보고서 시스템등록 - 14일 이내 종결보고서 / ❻ 집단사례보고서 시스템등록 - 7일 이내 중간보고서 - 14일 이내 종결보고서 / ❻ 집단사례보고서 시스템등록 - 7일 이내 중간보고서 - 14일 이내 종결보고서	▶ 감시기간 동안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참고자료 [부록 26]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 [부록 27]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안내문 ○ (검사 및 수동감시 해제) - 접촉자 분류 직후 및 감시기간(능동 및 수동) 해제 전 PCR검사 실시▶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신속하게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시행 - 위 관련 각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감시 해제 - 기타 시설(동거인, 감염취약시설 3종 외) 확진자 발생 시, 시설별 방역관리자가 대응하며, 신속항원검사(RAT) 2회 시행 ▶ RAT 2회(접촉자 분류 직후, 3일 차)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출근, 등교 제한 권고 ▶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 - 동일 공간에서 근무/생활하는 구성원(예 동일학급원, 동일 부서원, 동일 숙소 호실 생활자) -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참고자료 [부록 36] 기타 시설 확진자(산발·집단) 발생 시 조사 대응 **4) 의료기관 또는 집단시설 노출력 확인 및 조치** ▶ 코로나19는 초기에 증상이 가벼운 상태에서 전염력이 높고, 잠복기가 짧으며, 밀접한 접촉을 통해 전파하므로 초기에 접촉자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 ○ 시·군·구 방역관은 감염취약시설 3종 노출력 확인 및 조치 시, 대응 및 역량 초과로 판단되는 경우, 시·도에 대응 지원 협조요청 ○ 세부 동선 파악 조사는 방역관이 판단하여 필요 시 시행 - 방역관은 해당 기관, 시설에 대한 노출상황을 평가 후 결과에 따라 접촉자(노출자) 전수검사 계획 마련 후 시행 가능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3-2. 감염취약시설 집단사례 조사 **[집단사례 조사 대응절차]** 집단 유형: 감염취약시설 3종 조사 대상: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역학 조사: ❶ 상황 평가 ❷ 발생경위/발생현황 파악(지역별, 시설별) ❸ 시설/검사현황 파악 ❹ 시설위험도 평가 조치: ❺ 노출자 조치계획 수립 - 병원/시설격리 - 전수검사/선제적검사 - 일부 또는 전부 폐쇄 ❻ 필요시 집단사례보고서 작성 공유 **가. 사전 준비** **1) 사전 정보 확인** ○ **(환자정보)** 확진자 조사서 확인 ○ **(인력배정)** 환자 격리장소와 접촉자 발생 지역이 다를 경우 지역별 조사·대응 인력 재배정. **2) 접촉자에 대한 긴급조치 및 준비사항 전달** ○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여 즉시 분류 및 조치 ○ 감염취약시설 3종의 인력, 이용자, 환경 등 일반 현황 자료 등을 확보하고, 역학조사 및 현장대응 위한 행정조치 시행 고지(공문, 사전 고지문 등)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나. 현장 대응 1) 최초 상황 평가 ○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역학조사 계획과 업무 우선순위 등 설정 2) 시·도 업무 분장 ○ 유관부서와 협력대응 가능하도록 조직화 필요 3) 조사 ○ **(사전고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짐을 환자 및 관련자(시설장)에게 고지 ▶ 관련 조문 :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등 ○ **(환자조사)** 증상발생일 등 조사 ▶ **필요시 확진환자의 감염경로 조사 참고 사항** - 증상발생 전 14일 동안 역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보 파악 - 해외 방문력, 기존 확진환자와의 접촉력,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종사 이용 여부, 집단발병 사례 관련성 및 병력 등 조사(세부 동선 파악 조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시행) ○ **(시설·환경 관리)** 환자 거주 및 활동(사업장, 직장, 학교, 병원 등) 장소 등 시설 관리 ▶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라 보건소장이 소독 및 일시적 폐쇄 등 명령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에 제시된 소독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며, 시설 재개시간의 불필요한 연장 지양 ▶ **"Ⅸ. 환경관리(소독·환기) →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지침"** 참고 참고자료 [부록 3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지침 ○ **(접촉자 조사)** 노출 장소, 시기별 접촉자 조사 및 분류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차 상황평가를 실시하여 증상 발생일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노출장소 및 접촉자 조사 범위 재설정 - 방역관은 감염원 조사 결과, 공통 폭로가 의심되는 경우,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노출 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검사 대상자 확대가 가능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참고 사항** - 증상발생일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접촉자 범위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동거생활, 식사, 예배, 강의, 노래방, 상담 등 비말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전파가 주로 발생하므로 신속하게 접촉자 조사 및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 ▶ 접촉자 범위 예시 - 방역관 판단에 따라 증상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기준으로 조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감염원 조사 결과 공동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증상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기준) 14일 전부터의 접촉자까지 검사대상 확대 - 협력업체 및 인적 교류 현황 등 정보 수집을 통해 접촉자 조사 범위 설정 ▶ **확진환자 및 접촉자 조사 시 동선(이동경로 등) 정보 필요시 확인** : 동선은 환자 면접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히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GPS❶, DUR❷, 카드사용내역❸, (전자)출입명부[KI-Pass]❹, 간편전화체크인❺, 수기명부❻ 등의 조사는 시·도 방역관의 판단에 따름 ❶ GPS 조회는 시군구, 시도에서 경찰관서등에 요청 가능(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2항) ❷ DUR과 카드사용내역 조회는 시·도 방역관이 역학조사지원시스템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요청 ❸ (전자)출입명부[KI-Pass] 조회는 지자체 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요청 ❹ 간편전화체크인 조회는 해당 시설관리자 또는 해당업체 서버 접속 또는 해당업체 보안메일을 통한 정보요청 ❺ 수기명부는 해당시설 방문을 통해 정보수집 ▶ 수기명부에 기재된 개인안심번호는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조회 ▶ **(전자)출입명부 활용한 접촉자 추적관리 절차** - 시설물 방문자 정보요청→시설물 방문자 정보 통신사업자(SKT, KT, LGU+)에 주소정보(시·도/시·군·구)요청→회신받은 정보 능동감시 시스템(다중이용시설 방문)에 등록→접촉자 관할 시·도에 검사 및 추적관리 협조요청 ▶ 필요서류 : 정보요청 공문, 공문작성자 신분증 ▶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시 동선(이동경로 등) 공개 범위 등** - **(대상)**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정보* *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 - **(범위)** 역학적 필요성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정보 - **(시점)** 증상 발생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 코로나19 대응 지침 7-4판('20.4.3)부터 증상발생 '1일 전 → 2일 전'으로 변경 적용 - **(장소)** 시·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이동수단 포함) * 접촉자 범위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주기)** 동선 공개시 해당 시설 소독이 완료되었다면 전염의 위험성이 없다는 사항을 해당 기관에 공지	

<table>
<tr><th>쪽</th><th>현행(10-3판)</th><th>1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td><td></td><td>

4) 시설 내 추가환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 적용 상황

○ 병원 입원환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집단시설 이용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잠복기 동안 장시간 광범위한 노출▶이 확인된 경우

▶ 다수의 의료기관 방문, 군중행사 참석

▶ 상황별 추가 조치사항(요약)

* 시·도 역학조사관 또는 시·도 방역관의 상황평가 후 판단

<table>
<tr><th>상황</th><th>시설 · 환경 관리</th><th>접촉자 관리</th><th>인력 관리</th></tr>
<tr><td>병원</td><td>- 병동(병원) 일시 폐쇄 고려
- 환경조사(검사)
- 소독 및 재개장</td><td>- 입원환자 1인 1실, 또는 동일집단 격리
- 의료진 자가격리</td><td>대체근무
인력 편성</td></tr>
<tr><td>집단시설</td><td>- 시설 일시적 폐쇄 고려
- 환경조사(검사)
- 소독 및 재개장</td><td>- 중증 환자는 병원이송
- 접촉자는 1인1실 격리 원칙
※ 병원 이송이나 1인1실 격리가 불가능할 경우, 퇴원 후 자가격리 또는 동일집단 격리</td><td>대체근무
인력 편성</td></tr>
<tr><td>광범위 노출</td><td>- 시설별 노출 평가
- 통제 및 소독</td><td>- 접촉자 파악 및 관리를 위한 부처 협력 체계 마련(경찰, 소방 등)</td><td>-</td></tr>
</table>

바) 집단시설 내 의료종사자 및 퇴원(퇴소) 관리

○ 동일집단격리(코호트) 중인 환자(동반 보호자 등 포함)를 진료하는 의료종사자들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감염전파 최소화 방법을 적용

○ 접촉자(환자 및 보호자, 요양보호사 등 포함)가 퇴원 또는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가 가능하고,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시 자차, 도보, 구급차(보건소, 119)로 이동하며, 확진자와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 격리해제

바. 자료관리

1) 기본원칙

○ **(담당자지정)** 시·군·구 및 시·도 방역관은 지역별 역학조사 정보 담당자를 1명 이상 필수적으로 지정·운영하고 필요시 유동적으로 배치

○ **(연계관리)** 자료관리 담당은 상황 종료 시까지 시·군·구 및 시·도 담당자 및 질병관리청(권역센터)과 연락체계 유지하면서 후속 관리

○ **(시스템등록)** 확진자 조사서는 신고 후 24시간 이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2) 현장 대응 단계

○ **(업무분장)** 방역관은 환자 발생지역 지자체-시·군·구 '상황보고', '접촉자 DB 관리' 담당자 지정▶

▶ 2개 이상 시·도가 관련된 사례인 경우 각 시·도의 방역관이 각 시·도 단위로 업무 담당자 지정

○ **(업무연계)** 방역관은 상황 종료 시까지 '일일 상황보고'와 '접촉자 DB'가 동일한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관리'되고 중앙에 '보고' 되도록 함

</td><td></td></tr>
</table>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2조제2항 제7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2 ▶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사람 외에도 신고나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음 ▶ 자가격리자가 아닌 해외입국자 시설격리는 **「입국자 임시생활시설(검사시설) 관리 운영 지침」** 참조 **가. 자가격리 대상자 ⇒ 감염병의심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감염병의심자**가 자가격리 대상임 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구성원인 경우 기관내 밀접접촉자 ②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③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나. 자가격리 통지** ○ (통지방법) 지자체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우선 문자, SNS, 이메일 등을 활용해 격리 사실 통보하고, 법정 격리통지서는 사후 발급할 수 있음 - 격리 사실 통보 시 격리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을 기재하고, 격리안내문**(사진, PDF 등)을 첨부하여 함께 전송 * 격리대상자(확진자 및 공동격리자), 격리기간, 격리장소, 검사의무, 통지기관, 담당자 연락처 등. ** 확진자(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그 외 격리자(격리수칙안내문) - 격리 사실 통보는 최초 확진자를 통해 격리대상 동거인에게 일괄 통보할 수 있음 -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격리사실 통보 시 법정 격리통지서 원본 사진을 촬영해 함께 전송하는 방법으로 격리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별도 수령증 징구 생략 가능) - 해외입국격리자의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앱을 통한 격리통지서 발급 가능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격리사실 통보 문자 예시(☞ 지자체에 따라 일부 변경사용 가능) 〈해외입국격리자 통지〉-(안내문+격리통지서 첨부) 1. 귀하는 감염병예방법 제43조 등에 따라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 격리대상자 : ○○○ - 격리기간 : '22. ○.○. ~ ○. 24:00(음성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격리장소 : 자가 - PCR 검사 : 입국1일차, 격리 6~7일차 2.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격리기간 동안 자가격리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 링크, 접속 URL 등 안내 4. 첨부한 안내문 및 격리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통지서 사진촬영 첨부 5. 통지기관: ○○시 보건소장 (담당자 ○○○-○○○-○○○○) 〈확진자를 통한 동거가족 일괄 통지〉-(동거인 검사 및 예방접종여부 확인 후 격리통지서 첨부) 1. 귀하와 귀하의 동거인은 감염병예방법 제43조 등에 따라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 격리대상자 : 확진자 ○○○, 동거인 ○○○, 동거인 ○○○ - 수동감시대상자 : 동거인 ○○○, 동거인 ○○○ - 격리기간 : '22. ○.○. ~ ○.○. 24:00(동거인은 음성인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격리장소 : 자가 - 동거인 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 전 PCR 검사 : 격리 6~7일차 2.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첨부한 격리 격리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통지서 사진촬영 첨부 4. 통지기관: ○○시 보건소장 (담당자 ○○○-○○○-○○○○) ○ (격리관리) 격리자에 개별 이탈관리 및 건강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음 - 다만, 해외입국격리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관리 * 해외입국격리자는 입국 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 입국시 접종이력을 증빙한 예방접종완료자는 입국 후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앱 설치 ○ (자가격리 키트 전달)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등 자가격리 키트는 지급하지 않음 * 취약계층 등 지급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개별 지자체가 판단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다. 자가격리 방법 ▶ 장애인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보건복지부) 적용 ○ (격리 방법)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 -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격리수칙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생활지원비 등 미지원 -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공동격리) 장애인·영유아 등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음 ○ (격리장소 외부인 방문)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함 - 다만, 난방·가스·수도 등 설비의 긴급수리, 위급상황 또는 일정 변경이 어려운 공적 사무 수행 등의 경우 격리통지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제한적으로 외부인 방문 허용 - 출입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단시간 내 방문목적 달성 후 귀가 * 적정 거리두기(방문 중 별도공간 대기 등), 마스크 착용(KF94 이상), 집안 환기·소독 등 라. 일시 외출 ○ (허용 외출) 필수적 목적*의 경우 자가검진키트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외출이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 온라인 구매 등 우선 활용 * 병·의원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최초 외출에 한함) 등의 경우 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 임종, 장례 참석의 경우 외출 후 24시간 이내 복귀 ▶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임종 및 장례에 한함 ○ (시험응시, 투표)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시험응시 또는 투표 지침(문서)에 따라 조치 ○ (일반 진료) 「재택환자(확진자 및 공동격리자) 외래 대면 진료체계」적용 * 진료의 시급성 또는 대면진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 와에는 가급적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거나 격리기간 이후로 진료 연기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마. 자가격리 기간 및 격리해제 ○ (격리기간) 자가격리 기간은 가구 내 최초확진자의 검체 채취일(확진자 동거가족의 경우),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날 또는 해외에서 입국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자가격리 통지서에서 명시한 기간으로 함 * 단, 격리시설에서 격리한 경우 퇴소절차 등을 고려 실제 해제시간 조정운영 가능 ▶ (격리기간 예시) 확진자 1명(검체채취일 2.9일), 격리대상 동거인 2명인 경우 - 확진자 격리기간 : 2.9~2.15. 24시(즉, 2.16일 0시) - 동거인 2명 격리기간 : 2.9~2.15. 24시 ☞ 확진자와 동일 ○ (격리통지서) 법정격리통지서에는 실제 격리기간을 기재 ▶ (예시) 확진자 (검체채취일 2.9일, 양성확인 2.10일, 격리통보 2.10일), 격리대상 동거인 (검체채취일 2.10일, 음성확인 2.11일) - 확진자 법정격리통지서 상의 격리기간 : 2.10~2.15. 24시(즉, 2.16일 0시) - 동거인 법정격리통지서 상의 격리기간 : 2.10~2.15. 24시(즉, 2.16일 0시) ☞ 확진자와 동일 ○ (격리자 검사)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모든 자가 밀접접촉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2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함 - (1차) 격리통보를 받은 날, (2차 격리해제전 검사) 격리 6~7일차 되는 날 -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미결정에 대한 판정이 연속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지자체에서 검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리해제 여부 결정 ▶ 미결정 상태에서 격리해제 결정 시 후속 모니터링 및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검사 권고 ○ (격리해제) 6~7일차 격리해제전 PCR 검사 결과 음성인 확인 된 경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격리해제(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도 격리해제 적용) -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 이후에 음성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확인된 시점 이후부터 해제됨 - 해제전 검사 미실시자 또는 거부자는 최대잠복기인 14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격리해제 **바. 기타 사항** **1) 격리면제자** ▶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 2. 관리방안 → 다. 격리면제자 관리방안" 적용 **2) 자가격리자 중도 출국** ○ 자가격리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격리기간 중이라도 중도 출국을 제한적으로 허용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3-5. 역학조사 정보관리 **가. 기본원칙** ○ **(관리주체)** 접촉자 관리 종료 시까지 살거주지 보건소에서 작성·등록·수정을 하며 시·도에서 자료 확인·검증 지속 ▶ 2개 이상 지역이 관련된 사례인 경우 각 지역별 방역관이 각 지역 단위로 업무 담당자 지정 ○ 역학조사 실시 시·도 또는 시·군·구는 역학조사 완료 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자체(시·도)-권역 권역센터-중앙이 상호 보완관리 **나. 역학조사 관련 정보 종류 및 관리주체** 구분 / 확진자 조사서 / 집단사례조사서 작성 / 등록 / 시·군·구 보건소 / 시·군·구 보건소 / 시·도 관리(점검 등) / 시·도 / 시·도 / 권역센터 평가/환류/지원 / - / 권역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 ○ **(확진자 조사서)** 신고 후 24시간 이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첨부 ▶ 의사환자 등으로 기 신고된 환자가 확진 시에는 환자구분을 '확진환자'로 변경보고 후 확진자 조사서 등록 ▶ 확진환자로 확인된 환자만 확진자 조사서 등록 ○ **(집단사례조사서)** 집단사례를 인지한 보건소 및 시·도에서 집단사례 조사 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첨부(해당 집단사례의 지표환자 부분에 첨부)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역학조사→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대상자 클릭' 후 파일첨부 ▶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확진자 조사서 입력 시 집단사례조사서 파일로 첨부 ▶ 시도, 시군구 조사 정보 담당자는 관할 지자체의 확진자 조사서가 기한 내 입력 완료되도록 관리 ▶ 보건소 및 시·도는 주기적으로 미등록 확진자 조사서 확인 및 등록을 해야 함 ▶ 변경된 확진자 조사서 입력, 집단사례 조사서 등록 및 집단사례 전산시스템 관리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개선이 진행 중이며, 개선 완료 후 이용 안내 별도 공지 예정 참고자료 [부록 18] 감염경로 분류 기준 및 집단사례 등록관리 방안 관련서식 [서식 10] 코로나19 집단사례조사서 ▶ 해외 확진력이 확인된 해외 입국 재검출자의 경우 ① 확진자조사서 먼저 등록 후, ② 재검출 사례 조사서 등록 ▶ 확진자 조사서에는 해외에서의 최초 확진 정보 입력 ▶ 재검출 사례 조사서에는 국내 입국 후 재검출 정보 입력 후, 첨부파일에 해외 확진력 관련 증명서류 등 첨부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가. 사례정의** ○ **(재검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 **(단순 재검출)**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없으며, 임상증상 없는 경우 ○ **(재감염 추정)**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재감염 확정)** 재감염 추정사례 중 1, 2차 PCR 검체가 모두 확보되어 전장 유전체 분석으로 최초 확진과 다른 유전자형이 확인된 사례 ○ **(환자관리)** 지자체에서 아래 사례분류 기준에 따라 관리조치 실시 ▶ 사례분류 기준에 따른 환자 관리조치 ① 단순 재검출 : 증상모니터링, 보건교육 실시(해외 입국 재검출자의 경우 일반 입국자에 준해 관리) ② 재감염 추정사례 : 신규 확진환자 번호 부여 후 확진자에 준한 관리조치(격리, 입원치료) ○ **(접촉자 관리)** 지자체에서 아래 사례분류 기준에 따라 접촉자 관리조치 실시 ▶ 사례분류 기준에 따른 접촉자 관리조치 ① 단순 재검출 : 접촉자 격리조치 없음, 증상모니터링, 보건교육 실시 ② 재감염 추정사례 :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자가, 시설, 병원) **다. 재감염 추정사례 보고** ○ **(보고절차)** 지자체 → 권역별질병대응센터,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지자체) 재검출 사례조사서 작성(시스템 개선 전까지 재검출자 사례조사서 종합의견에 '단순 재검출' 또는 '재감염 추정'기재) 후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및 환자관리시스템에 신고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신규 환자 번호 부여 ▶ (권역센터) 시스템의 재검출자 사례조사서를 통한 재감염 추정사례 검토, 재감염 추정사례에 대한 지자체 관리조치 점검, 결과 환류 등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재감염 추정사례 및 확정사례 정보관리, 재감염 확정을 위한 전장유전체 분석 등 추가검사 및 종합평가 실시	
33	▶ 시·도내 중환자용 병상 부족으로 중증 확진환자의 시·도간 전원이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지원상황실(1800-3323)로 전원 요청	(삭제)	〈수도권현장대응팀〉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지원상황실이 아닌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수도권 내 전원 및 수도권-비수도권 간 전원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34	▶ 시·도내 중환자용 병상 부족 시 전원지원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원중)로 전원 요청 후 병상 배정, 시·도내 전담병원 및 일반병원 등 병상 부족 시는 (1차) 개별 시·도간 협의 → (2차)권역별 병상 공동대응 협의체 협의	(삭제)	〈수도권현장대응팀〉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지원상황실이 아닌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수도권 내 전원 및 수도권-비수도권 간 전원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36	라. 생활치료센터 입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상세사항은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안내」 참조 ▶ 시설입소 대상자 ▶ 상세사항은 "V. 확진환자 대응방안 → 1. 확진환자 관리 → 가. 환자 초기 분류" 참조	라. 생활치료센터 입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삭 제)	
36	▶ (원칙)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발생 후 7일까지는 생활치료센터 입소하고, 이후 3일은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 ▶ 상세사항은 "V. 확진환자 대응방안 → 1. 확진환자 관리 → 라. 생활치료센터 입소 차료가 필요한 경우 → 3) 생활치료센터(시설)" 항목 참고 - 증상발생 7일 후 퇴소하는 경우, 일시적인 격리해제시간은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으로 제한되며, 이동수단은 일반 퇴소와 같은 방식으로 함. 지정된 격리장소에서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격리 실시(자가격리앱 설치) 후 PCR 검사없이 격리해제	(삭 제)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격리 통지서 발급 ○ 격리통보 주체 - (확진환자로 인지된 즉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 (거주지로 이동 후 확진된 경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 ○ 장소/기간 - 최초 증상발생일 또는 확진일(무증상의 경우)을 기준으로 치료가 필요한 7일은 생활치료센터 입소기간으로, 나머지 3일은 자가격리 기간으로 표시 ○ 변경통보 -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판단 등에 따라 의학적 치료 필요성 결정 시점 등이 달라지는 경우는 자가격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①격리기간이 변경되거나 ②병원전원으로 격리장소 및 격리기간이 변경될 경우,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하며 그 절차는 최초 격리통지서 통보와 같음	▶ 격리 통지서 발급 ○ ---------- ---------- ---------- ---------- ----- ○ -------- - ---------- ---------- 예방접종미완료자의 경우 추가 3일을 자가격리(자율격리) 기간으로 표시 ○ --------- ---------- ---------- 예방접종미완료자의 자가격리(자율격리) ---------- ---------- ----------	
	○ (환자 기본유형: 7일 후 퇴소 및 자가격리) 최초 증상발생일 또는 확진일(무증상의 경우)을 기준으로 치료가 필요한 7일간이 생활치료센터 입소기간으로, - 환자의 증상발생일 기준(무증상의 경우 확진일) 입소시작일에 따라 환자별로 입소일이 같아도 생활치료센터 입소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삭 제)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 퇴소기준 변경 및 입퇴소 이동수단 변경사항 반영
40	[퇴소 및 자가격리 대상 분류도]	(삭 제)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 퇴소기준 변경 및 입퇴소 이동수단 변경사항 반영

<table>
<tr><th>쪽</th><th>현행(10-3판)</th><th>1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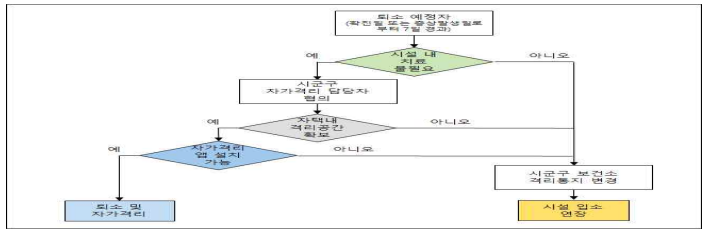

▶ (7+3) 임상 경과기반(무증상 확진환자 : 확진일로부터 10일 / 유증상 확진환자 : 증상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에서 10일의 격리기간을 시설·자가격리로 나눠서 시행

- (예) 무증상 확진일(10.1) 이후 3일째(10.3) 입소했다면 입소 6일째(10.8) 오전 퇴소 후 자택으로 이동해 3일간 자가격리하고, 확진 후 11일째 날(10.11) 정오 12시에 격리해제

<table>
<tr><th>10.1</th><th>10.2</th><th>10.3</th><th>10.4</th><th>10.5</th><th>10.6</th><th>10.7</th><th>10.8</th><th>10.9</th><th>10.10</th><th>10.11</th></tr>
<tr><td>확 진 또는 증상* 발생</td><td></td><td></td><td></td><td></td><td></td><td></td><td>시설 퇴소 가능일**</td><td></td><td></td><td>격리해제 가능일*** (정오 12시)</td></tr>
<tr><td colspan="11">⇐ 전체 격리 기간 ⇒</td></tr>
<tr><td colspan="7">⇐ 시설격리 기간 (+7일)⇒</td><td colspan="3">⇐ 자가격리 기간 (+3일)⇒</td><td></td></tr>
</table>

* 무증상 확진자가 이후 증상 발생하는 경우, 증상 발생일이 기준일이 됨

**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 없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경우 한정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만 격리 해제

(대상자 확정) 퇴소 및 자가격리를 위해서는 재택치료, 건강요건, 격리공간요건, 모니터링 요건 충족 필요

① 건강관리책임자(의료진)가 더 이상 시설 내 치료가 필요하지 않</td><td></td><td></td></tr>
</table>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다고 판단하고, ② 자택 등에 독립적 공간 확보가 가능하여 자가격리에 적합하며 (추가 설문지의 재택치료 가능 요건 참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 등은 10일 격리 후 퇴소) ▶ 환자의 거주지와 자가격리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 환자 관할 보건소에 해당 사항을 반드시 통보해야 함 ③ 자가격리 앱을 시설 입소 시 휴대한(휴대폰의 명의자는 관계없고, 휴대여부가 중요) 휴대폰에 설치하여 자가격리 기간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경우 7일 이후 퇴소자로 확정		
41	▶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추가적으로 머물러야 하므로 관할 보건소와 논의하여 격리통지 변경 필요 - **(자가격리 부서 연계)** 생활치료센터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시군구 자가격리 전담부서에 퇴소 및 자가격리 예상명단을 송부하고, 전담부서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등 이견이 없으면 확정 ① 자가격리 모니터링 전담부서에 늦어도 퇴소 전일 오전 11시까지 대상자 확정 요건을 검토한 '퇴소 후 자가격리 예정자 명단' 송부 ② 퇴소 전일 자정까지 전담부서의 이견이 없을 경우 명단 확정 [부록 30] 퇴소 후 자가격리 대상자 명단 양식(엑셀 서식)	(삭 제)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 퇴소기준 변경 및 입퇴소 이동수단 변경사항 반영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일반적으로 **시·도 운영 생활치료센터**에서는 같은 시·도 거주자를 담당하므로 시·도 운영 생활치료센터에서 관할 시·군·구 내 실거주지로 퇴소하여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자가격리팀에서 안내한 지자체 자가격리 모니터링 전담부서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 외에도 **시·도 단위에서 추가적인 연락 방법을 보완할 수 있음** - (예시) 대전시 운영 생활치료센터에는 대부분 대전시민이 입소하고 있으며, 대전시 운영 생활치료센터를 퇴소하는 경우 주로 관할 자치구(중구, 서구, 유성구 등)의 모니터링 전담부서에 연계되므로 대전시 내부적으로 별도의 소통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타 시·도 환자가 퇴소 이후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 생활치료센터 담당자는 격리통지서 상 실주소지 관할 시·군·구 자가격리 모니터링 전담부서로 퇴소 환자가 연계될 수 있도록 **명단 송부에 유의**할 것 - (예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생활치료센터에서 경기도 용인시민과 서울시 노원구민이 퇴소하는 경우, 경기도 용인시 모니터링 전담부서와 서울시 노원구 모니터링 전담부서에 각각 연계 → 이 경우, 센터의 **복지부 담당자는 관할 실주소지에 환자가 연계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하고, → 경기도 용인시와 서울시 노원구 자가격리 전담부서는 용인시민과 노원구민이 관할 생활치료센터 부족 또는 의료진 부족 등의 사유로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퇴소하는 것이므로 적극적 협조 필요	(삭 제)	
Ⅵ.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89 ~ 96	**Ⅵ.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중간 생략) 나. 사후 조치사항 ○ 검사 종료 시 ----------	**Ⅵ. (전체 삭제)** (중간 생략) 나. 사후 조치사항 ○ 검사 종료 시 ----------	(지침관리팀)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사례정의 수정으로 삭제
Ⅶ. 사망자 관리			
97	**Ⅶ 사망자 관리** 1. 목적 ○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으로 감염 확산 방지 및 사회 불안 요인 차단 ▶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 5. 확진환자 사망 신고·보고" 참조	**Ⅶ 사망자 관리** 1.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애도, 장례지원 인력의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예방 규정에 따른 안전한 장례절차를 지원한다. (삭제)	〈지침관리팀〉 장례지침 변경에 따른 수정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97	2. 원칙 ○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 실시 ○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의 동의하에 “先 화장, 後 장례”실시 ○ 신설 ▶ 화장 및 장례 예시 : 의료기관(시신처리, 입관) → 화장시설(화장) → 장례식장(장례) : 의료기관(시신처리, 입관) → 장례식장(안치) → 화장시설(화장) → 장례식장(장례)	2. 원칙 ○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고 유족의 뜻을 존중하여 장례지원 실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장사방법을 시행 ○ 장례절차에 따른 방역조치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수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가. 장사방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권고 나. 장사절차: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하 장례 후 화장 권고	〈지침관리팀〉 장례지침 변경에 따른 수정
97	3. 범위 및 역학 ○ **(범위)**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인된 사망자의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 전반 ○ **(역할)**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의료기관, 장사시설(화장시설, 장례식장 등)간 연계체계 구축하여 역할 수행 - **(중앙사고수습본부)** ---------- - **(중앙방역대책본부)** ---------- - **(시·도/시·군·구)** ---------- - **(의료기관)** ---------- - **(장례식장)** ---------- - **(화장시설)** ----------	3. 범위 및 역학 ○ **(범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확인되어 격리기간 중 사망자*의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 전반 * 사망 후 코로나19 확인된 경우도 포함하며,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된 이후의 사망은 해당되지 않음 ○ **(역할)** 각 기관 및 장사시설(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간 연계체계 구축하여 역할 수행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지침관리팀〉 장례지침 변경에 따른 수정
97	<신설>		〈지침관리팀〉 장례지침 변경에 따른 수정

<table>
<tr><th>쪽</th><th>현행(10-3판)</th><th>1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td><td></td><td>
<table>
<tr><th>기 관</th><th>역 할</th></tr>
<tr><td>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td><td>- 장사지원 관련 방역대책본부,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장사시설 협업체계 유지
▶ (장사지원센터/1577-4129) 장사시설 예약지원 및 장사시설 이용 안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청 시 현장지원</td></tr>
<tr><td>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td><td>- 장례지침 개정 및 관리, 장례비용 지원</td></tr>
<tr><td>시·도
시·군·구</td><td>- 유족에게 장사방법 및 절차▶ 설명, 유족의 신체사항 확인
▶ 사망자 연고자에게 「장사법」 및 「감염병예방법」 제0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 안내
◎ 선화장, 후장례
◎ 방역조치 완수 후 장례 후 화장
- 장사시설 이동 시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동원(지역 장례식장 등 협조 등해 지원)
- 개인보호구▶ 지원
▶ 시신 직접 접촉 시
○ 개인보호구 4층(KF-94 등급이상의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접촉 상황에 따라 보호구 추가 선택
▶ 시신백 수습 이후
○ 보건용 마스크(필요시 일회용 장갑)
- 시설·장비(의료기관, 운구차량, 장사시설 등) 방역조치 점검 등</td></tr>
<tr><td>의료기관</td><td>- 유관기관(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자체, 장례식장 등) 상황 통보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시신 처리
참고자료 [부록 9] 코로나19 장례관리 및 시신처리 참고사항</td></tr>
<tr><td>장례식장 등</td><td>- 시신처리 지원, 장례식장 안치, 장사시설 운구 지원, 장례절차 진행
참고자료 [부록 9] 코로나19 장례관리 및 시신처리 참고사항
▶ (사)한국장례협회 : 장례식장 및 운구차량 섭외 등 원활한 장례절차를 위한 지원·협조</td></tr>
<tr><td>화장시설</td><td>- 일반 사망자와 코로나19 사망자 구분없이 일상적인 예약 및 화장 운영
※ 마지막 시간으로 배정 등의 추가적 방역조치가 불필요하므로 일반적 절차에 준하여 화장 시행</td></tr>
</table>
</td><td></td></tr>
<tr><td>98
~
99</td><td>4. 단계별 조치사항
가. 평상시 업무
5. 행정사항

(신설)</td><td>4. 단계별 조치사항 (전부삭제)
가. 평상시 업무
5. 행정사항 (전부삭제)

4. 단계별 조치사항
가. 임종 예상 시
○ (의료기관) 환자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여부를 확인한 후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 대기 요청한다.
- (면회) 가족이 원할 경우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서 환자 면회 가능</td><td>〈지침관리팀〉
장례지침 변경에 따른 수정</td></tr>
</table>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 (환자와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 4종 보호구 착용 • (거리(1m 이상) 유지하며 접촉없는 경우) 마스크 착용, 해당 기관의 입실규정에 따라 추가 - **(설명)** 가족에게 사망 후 시신처리 방법 등 임종 후 절차에 대해 설명 ▶ ▶ 유족 참관자 범위 및 방법, 사후 시신 수습 과정과 코로나19 장례절차에 대해 안내 - **(보고)** 보건소 등에 상황 통보 가. 임종 후 ◆ 필수사항 :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족과 고인의 마지막 작별을 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애도기회 보장 ○ **(보건소)** 유족에게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장사절차 중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유족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의 **가목 및 나목**에 대하여 정확히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가. 장사방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 권고 나. 장사절차: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 ◆ 장례절차 예시 1) 선 화장, 후 장례 ➔ 절차: **의료기관(사후처치, 시신백 수습, 입관) → 화장시설(화장) → 장례식장(장례)** 2)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 ➔ 절차: **의료기관(사후처치, 시신백 수습) → 장례식장(장례, 입관)→ 화장시설(화장)** ▶ 시신백 수습후 시신백 개방과 시신접촉 최소화하며, 시신백 ○ **(의료기관)** 중앙방역대책본부, 보건소(개인보호구 지원, 방역소독 등) 등에 상황 통보, 유족에게 사망 설명하고 시신처리 시점을 협의한다. **관련서식** [서식 2]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① **(애도)** 유족에게 애도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유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 후 사망자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유족이 사망자와 접촉(손을 잡는 등)을 원할 경우 반드시 시신의 **사후 처치**를 수행한 후 가능함을 설명하고, 감염예방절차▶를 교육한 후 시행한다. ▶ 개인보호구 4종 착용과 탈의방법 및 탈의 후 흐르는 물에 손씻기 등 - 유족이 시신 접촉 후 개인보호구 탈의와 손씻기 준수 여부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를 확인한다. ② (**사후 처치**) 유족과 협의된 시점에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사후 처치**▶ 한다. ▶ 시신의 사후처치 • **개인보호구**(방수성 긴팔가운,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눈보호구 또는 고글, 장갑, 필요시 신발덮개 등) 착용 • 시신의 모든 튜브, 배액관, 카테터 등 제거 - 날카로운 장치를 제거할 때는 찔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제거 즉시 전용 폐기물함에 폐기 (보철물, 이식물 등은 제거하지 않음) • 시신의 배액 부분을 포함한 외부 상처는 소독하고 체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표면을 비투과성 물질로 드레싱 처치 • 구강 및 비강의 분비물은 필요한 경우 부드럽게 흡인하여 제거 • 체액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신의 구강, 비강 및 직장을 막고, 피부에 남은 체액은 닦아낸 후 건조 참고자료 [부록 9] 코로나19 장례관리 및 시신처리 참고사항 - 사망자가 의사환자인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대기하거나 확진환자에 준하여 시신처리 후 안치실에 안치한다. ▶ 검사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 음성이면 일반사망자로 처리 ③ (**시신백에 시신수습**▶) 유족의 애도 여부를 최종 확인한 다음 시신백에 시신을 수습한다. - 시신을 시신백으로 수습할 때 참여하는 인력은 개인보호구 4종을 착용한다. - 시신백의 겉면이 시신의 체액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시신백의 겉면과 시신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옮긴다. - 시신백의 지퍼를 닫은 후 겉면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닦는다. - 이송카트에 체액 등 오염이 있는 경우 소독제로 닦는다. - 시신백의 겉면 소독 이후 시신백 이송 등 수행인력은 별도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의 감염관리 조치가 요구되지 않으며 기본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다. ▶ **시신백에 시신수습 절차(예시)** • 시신백의 외피를 이송카트에 씌운다. • 시신백의 내피를 외피위에 올려 지퍼를 열어 놓는다. • 이송카트의 높이를 조정한다. • 시신을 내피에 수습한다. • 내피의 지퍼를 닫는다. • 내피의 겉면을 닦아 소독한다. • 외피의 지퍼를 주의깊게 단단히 닫는다. • 외피의 겉면을 닦아 소독한다(외피의 지퍼가 천소재일 경우 지퍼를 따라 방수 테이프를 덧부착한다). • 이송카트 등에 체액이 묻은 경우 소독제로 닦아 소독한다. • 보호구를 탈의하고 손씻기를 한다. ※ **시신백 사용시 고려사항** • 시신의 사후 처치로 체액 유출이 없다면 1겹 시신백 사용이 가능하나, 특별상황▶에는 이중 시신백의 사용을 권고하며, 시신백 바닥에 흡습포를 확인하고 체액 유출이 많은 등 필요한 경우 흡습포 추가 ▶ 체액 과다노출 또는 장거리 이송, 대량의 시신 처리의 경우 • 시신백의 재질은 미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플라스틱 이상으로 견고하여야 함 ※ U자형 지퍼식은 중앙 지퍼식보다 시신과의 접촉이 적음 • 시신의 안면부를 **투명 재질로** 제작된 것은 시신백을 열지 않고 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어 유족에 대한 배려를 위해 고려할 수 있음 ④ 해당 장소는 의료기관 내 규정에 따라 소독·환기한다.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고 ○ **(장례식장 등)** 시신수습 및 이송 ① (시신백에 시신 수습을 함께 하는 경우) 개인보호구 4종(1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KF94 동급이상의 마스크,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을 착용한다. ▶ 보건소는 장례식장 등에 개인보호구 구비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개인보호구 우선 지급 ② (시신백 처리된 상태로 인수받는 경우) 기본 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 장갑(필요시) 착용하고 이송한다.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환자 가족에게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을 시행하도록 안내, 유족 참여현황 파악, 방역수칙 설명(필요시 개인보호구 지급)한다. - 필요 시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확보 나. 장례 ○ (**장례식장 등**) 시신백으로 수습된 시신을 이송, 장례식장 안치, 장례 및 장사시설로 운구 지원하며, 유족이 선택한 장례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선 화장, 후 장례인 경우 - **시신백은 닫혀진 상태를 유지**하여 입관하고 화장시설로 운구한다. 2) 장례 후 화장인 경우 ① (**안치**) **시신백은 닫혀진 상태를 유지하여 안치하고, 개방을 최소화한다.** ② (**입관**) 유족이 입관을 참관하는 경우 시신백을 개방하지 않을 때에는 유족은 마스크(필요시 장갑)를 착용하고, 시신백을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 참관 시 유족이 시신백을 개방하여 고인을 보기 원하는 경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우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설명하고, **사전 준비 및 방역조치**▶ 철저 하에 시행한다. 유족은 시신을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 **사전 준비 및 방역조치** • 장례업무 담당자는 **개인보호구 4종을** 착용한다. • 사신백의 얼굴 부분만 개방하여 시신백 개방을 최소화하며, **얼굴 이하 전신은 시신백 위로** 린넨포 등을 이용하여 덮어 준비한다. • 시신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복부나 흉부가 압박되어 공기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 유족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시신과 시신백을 접촉하지 않으며 고인을 접견한다. * 만약 유족이 시신을 접촉할 경우 개인보호구 4종의 착탈의 방법을 교육받고 착용한다. • 장례업무 담당자는 업무 중 (본인의) 눈이나 얼굴을 만지지 않으며, 다른 활동을 함께 하지 않는다. (**업무 수행 후**) • 업무를 끝낸 후 순서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보호구를 탈의한다. • 마스크는 마지막 단계에서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손씻기를 한다. ★ 시신 접촉 관련 업무를 하는 장례업무 담당자는 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사용과 착탈의 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훈련받는다. 참고자료 [부록 8]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③ (**운구**) 발인 후 화장시설로 운구한다. 운구에 참여하는 인력은 기본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필요시 장갑)를 착용한다. 유족이 운구를 원하는 경우 동일한 방역수칙 하 가능하다. ▶ 입관 후 운구시 추가적 방역조치는 요하지 않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에 따름 - 장사 절차 진행 시 문상객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안내에 따름	

<table>
<tr><th>쪽</th><th>현행(10-3판)</th><th>1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td><td></td><td>○ (화장시설) 고별장소에서 유족의 애도를 지원한다. 입관 후 시신 운구·화장에 따른 추가적 방역조치는 요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한다.
- 마지막 시간으로 배정 등의 추가적 방역조치가 불필요하므로 일반적 절차에 따른다.
○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 등의 방역소독은 관련 지침▶에 따른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안내에 따름
○ (시·도 및 시·군·구)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동원, 동행 유족·운구요원·장사요원 등에게 방역수칙 안내(필요시 개인보호구 지급), 확인한다.
- 장례종료 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결과 보고(시·도)
5. 행정사항
<기관별 행정사항>
<table><tr><th>기관</th><th>내 용</th></tr><tr><td>중앙사고수습본부</td><td>• 장례지원반 운영을 통한 장사지원 협업체계 유지
- 중앙사고수습본부-지자체 등 연계·협조체계 구축·운영, 상황전파 등
- 사망자 화장시설 예약 지원 및 장사시설 이용안내
▶ 장사지원센터(한국장례문화진흥원) 1577-4129</td></tr><tr><td>중앙방역대책본부</td><td>• 지침 개정 및 관리, 장례비용 지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에 따름</td></tr><tr><td>시·도</td><td>• 유족 및 장례지원 유관기관 연락체계 유지 및 행정지원</td></tr></table></td><td></td></tr>
</table>

<table>
<tr><th>쪽</th><th>현행(10-3판)</th><th>1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td><td></td><td>
<table>
<tr><th>기관</th><th>내 용</th></tr>
<tr><td>시·군·구</td><td>
- 공설 화장시설, 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등 운영·관리체계 유지
▶ 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이 있는 경우 해당 장례식장 우선 이용, 없는 경우 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이용
- 개인보호구 지원 및 방역조치 지도·점검
- 장례 종료시까지 장례지원 및 진행상황 확인, 결과 보고
- 인도적 사유에 따른 자가격리 일시해제
▶ 자가격리 중 임종, 장례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향
- 반드시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도록 격리대상자에게 안내
- 담당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차량(구급차 권장)으로 자가격리대상자와 함께 이동
▶ 본인의 배우자 장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 세부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름
• 코로나19 시신의 장례관리 대상자에 적합한지 확인
- 확진환자 격리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가 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코로나19 장례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장례절차에 따름
▶ 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이 있는 경우 해당 장례식장 지정장례식장 이용
</td></tr>
</table>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관련 사항은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확진자에 대한 별도 정보관리]" 참고
</td><td></td></tr>
</table>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Ⅷ. 실험실 검사 관리	
102	▶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 ▶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 :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삭제)	〈진단총괄팀〉 101쪽 내용과 중복
103	가. 의뢰방법 ○ 검체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 ▶ 검사 의뢰시 검사대상이 '최초 의뢰(신규)' 또는 '기 확진자' 인지 검체시험의뢰서(의사소견란)에 추가로 명확히 기재하여 의뢰 관련서식 [서식 18] 검체시험의뢰서 서식 (신설)	가. ---- ○ ---------- ▶---------- 관련서식 ----------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유증상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중 밀접접촉자,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에 대한 검사는 반드시 '개별검사'로 의뢰(취합검사 불가)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 건강보험 청구건은 별도로 정한 관련 급여기준을 따름	〈진단총괄팀〉 우선순위에 따른 PCR 검사 체계로 전환에 따른 개정 〈중수본〉 보험급여과 의견 추가
104 ~ 105	4. 검사 기관 다. 가. 의료기관▶ ▶ 자체적으로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 및 검사전문 의료기관(수탁검사기관) ○ (유전자 검사) 의사환자 등 대상 유전자 검사, 격리해제를 위한 유전자 검사 ○ (확진검사)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	4. 검사 기관 라. 가. 의료기관▶ ▶ 자체적으로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 및 검사전문 의료기관(수탁검사기관) ○ (유전자 검사) (삭제) ○ (삭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	(진단총괄팀〉 자구 수정 〈중수본〉 보험급여과 의견 반영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참고자료 [부록 11]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 ○ **(응급선별검사)**▶ 응급의료기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 ▶ 신속한 음성 확인을 위한 선별 목적의 검사로 검사 위탁 불가 ① 핵산추출 및 유전자증폭을 위한 시약 혼합 등의 과정이 필요한 검사법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중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행 ② 핵산추출 및 유전자증폭을 위한 시약 혼합 등의 과정이 생략된 검사법의 경우, 진단검사전문의가 상주하는 응급의료기관에서 검사 시행 ▶ 응급선별검사 적용 대상 o 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이 없는 응급실❶ 내원환자로서 ①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 등급 및 2 등급)❷ 또는 ②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또는 시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 등급)❷ ③ 분만실에서 시행하는 분만 및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❶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❷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제 2015-243호) o 코로나19 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확진검사 시행(응급선별검사 대상 아님) ○ **(신속항원검사)** 일반 의료기관 ▶ **신속항원검사 적용 대상**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참고자료 [부록 11]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 ○ **(응급선별검사)**▶ 응급의료기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 ▶ 신속한 음성 확인을 위한 선별 목적의 검사로 검사 위탁 불가 ① 핵산추출 및 유전자증폭을 위한 시약 혼합 등의 과정이 필요한 검사법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중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행 ② 핵산추출 및 유전자증폭을 위한 시약 혼합 등의 과정이 생략된 검사법의 경우, 진단검사전문의가 상주하는 응급의료기관에서 검사 시행 ▶ **응급선별검사 적용(건강보험 지원) 대상** o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한 경우 ① 응급실* 내원환자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 (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참고 ②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 **(신속항원검사)**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 등 일반 의료기관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신속항원검사 적용(건강보험 지원) 대상** ①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 내원환자 ② 중환자실 입원환자 ③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의 혈액투석 환자 ④ (한시적 적용)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이 있는 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	
107	5. 검사 기관별 결과 보고 가. 의료기관 1) 확진검사 ○ 검사기관에서는 의사환자 등의 검사를 의뢰한 기관(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으로 결과 통보 및 제출 -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결과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환자 감시" 메뉴에 입력·보고 - 검사결과는 의료기관 담당 의료진을 통해 환자에게 통보 및 설명 ▶ 단, 양성의 경우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789, 7790)과 검사의뢰 보건소로 즉시 유선 통보	5. 검사 기관별 결과 보고 가. 의료기관 1) 확진검사 ○ 검사기관에서는 검사를 의뢰한 기관(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으로 결과 통보 및 제출 -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결과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환자 감시" 메뉴에 입력·보고 - 검사결과는 의료기관 담당 의료진을 통해 환자에게 통보 및 설명 ▶ 단, 양성의 경우 검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즉시 보고**(유선, 기타 핫라인 등 방법)하고, 발생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상황실〉 ※ 종합상황실로 유선신고할 필요는 없음(유선 보고 의무 삭제)
107	2) 응급선별검사 ○ **(양성인 경우)**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PUI1)-응급선별검사 양성)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내 웹신고 및 확진검사(기존 유전자검사) 실시	2) -------- ○ **(-------)** 지체없이 확진검사(유전자검사) 실시	〈진단총괄팀 의견〉 의사환자 개정 반영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음성인 경우) 신고 불필요, 검사결과 환자에게 통보 및 설명 3) 신속항원검사 ○ (양성인 경우) 의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PUI1)-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유선신고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내 웹신고 ▶ 해당 환자는 격리공간 또는 (격리공간이 없는 경우)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 및 격리 ▶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 소독 ○ (음성인 경우) 신고 불필요,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확진 PCR 검사 권고, 필요시 소견서 발부 참고자료 세부 조치사항은 [부록 20] 신속항원검사 대응조치 방안 참고	○ (--------) 검사결과 환자에게 통보 및 설명 3) -------- ○ (--------) 지체없이 확진검사(유전자검사) 실시 ▶ 의료기관 자체 PCR 검사가 불가한 경우 검사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소견서 발부, 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유전자 검사(PCR) 실시 안내 ▶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착용,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자차 등을 활용하여 이동 ○ (----------)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코로나19 의심되는 경우 PCR 검사 권고 - 방역패스 목적으로 검사한 경우는 음성확인서 발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 참조	
108	다. 권역센터 ○ 검사를 의뢰한 검역소로 결과 통보 ▶ 양성인 경우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789, 7790)로 당일 보고	다. 권역별질병대응센터 ○ 검사를 의뢰한 검역소로 결과 통보 ▶ 양성인 경우 질병관리청 내부전산망(온디즈 메모보고) 및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로 당일 유선보고 (043-719-7789, 7790)	〈상황실〉 기관명칭 수정 및 보고방법 변경 권역센터에서 검역소로 통보하는 방법도 추가 필요
X. 자원관리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114	4. 환자의 전원 및 시설 입소 가. 시·도 간 중증환자 전원 절차 ① 해당 의료기관(환자 담당의사) → 전원지원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원 중, 국번 없이 1800-3323)로 전원 요청 ② 전원지원상황실은 의료기관과 직접 협의하여 전원을 결정하고, 의료기관은 협의결과를 해당 시·도에 사후 보고 [중증 환자 시·도 간 전원 체계] (그림)	4. 환자의 전원 및 시설 입소 가.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삭제) (삭제)	〈수도권현장대응팀〉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지원상황실이 아닌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수도권 내 전원 및 수도권-비수도권 간 전원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115	▶ 유의사항 ▶ 각 시·도 협조 필요사항 나. 생활치료센터 입소 ① ---------- ② ---------- 다. 전원/입소 요청 시 주의사항 ○ ---------- ○ ----------	(삭제) 가. 생활치료센터 입소 ① ---------- ② ---------- 나. 전원/입소 요청 시 주의사항 ○ ---------- ○ ----------	
116	라. 증상이 호전되어 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할 때 절차	다. 증상이 호전되어 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할 때 절차	
	XI. 질병개요		
117	2. 발생 현황 가. 국외	2. ——— 가. ——	〈지침관리팀〉 현황 현행화

<table>
<tr><th>쪽</th><th>현행(10-3판)</th><th>1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td><td>○ '21.12.19 각 국가지역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8,387,658,165건 실시
○ '21.12.20. 각 국가지역 등에서 환자 273,900,334명 발생, 5,351,812명 사망</td><td>○ '22.1.27. ———————————— 9,854,237,363건 실시
○ '22.1.28. ———————— 364,191,494명 발생, 5,631,457명 사망</td><td></td></tr>
<tr><td>117</td><td>출처: WHO Dashboard('21.12.20.)
<table><tr><th>구분</th><th>7일 내 신규 발생현황</th><th>누적 발생현황</th><th>7일 내 신규 사망현황</th><th>누적 사망현황</th></tr><tr><td>미주</td><td>997,063</td><td>99,775,067</td><td>11,933</td><td>2,386,978</td></tr><tr><td>유럽</td><td>2,601,597</td><td>94,637,598</td><td>26,311</td><td>1,628,961</td></tr><tr><td>동남아시아</td><td>83,568</td><td>44,833,250</td><td>2,377</td><td>716,955</td></tr><tr><td>지중해 동부</td><td>78,961</td><td>17,026,968</td><td>1,343</td><td>313,866</td></tr><tr><td>아프리카</td><td>238,151</td><td>6,802,970</td><td>548</td><td>154,356</td></tr><tr><td>서태평양</td><td>211,389</td><td>10,823,717</td><td>2,646</td><td>150,683</td></tr></table></td><td>출처: WHO Dashboard('21.12.20.)
<table><tr><th>구분</th><th>7일 내 신규 발생현황</th><th>누적 발생현황</th><th>7일 내 신규 사망현황</th><th>누적 사망현황</th></tr><tr><td>미주</td><td>7,357,160</td><td>132,400,000</td><td>27,473</td><td>2,489,629</td></tr><tr><td>유럽</td><td>11,568,338</td><td>138,839,947</td><td>21,524</td><td>1,757,462</td></tr><tr><td>동남아시아</td><td>2,288,885</td><td>51,328,032</td><td>4,369</td><td>733,767</td></tr><tr><td>지중해 동부</td><td>523,525</td><td>18,614,606</td><td>1,371</td><td>320,498</td></tr><tr><td>아프리카</td><td>128,608</td><td>8,037,551</td><td>1,657</td><td>163,532</td></tr><tr><td>서태평양</td><td>1,123,280</td><td>14,970,594</td><td>2,648</td><td>166,556</td></tr></table></td><td>〈지침관리팀〉
WHO Dashboard 현행화</td></tr>
<tr><td>118</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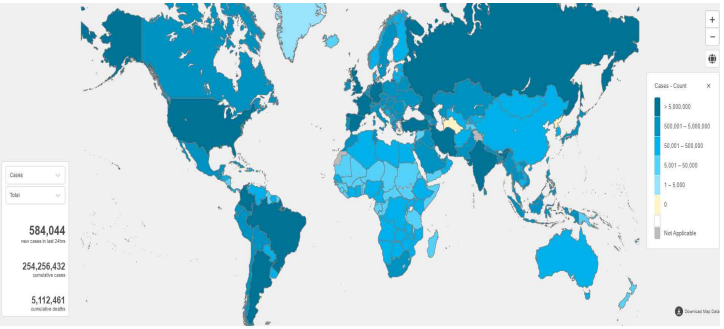
</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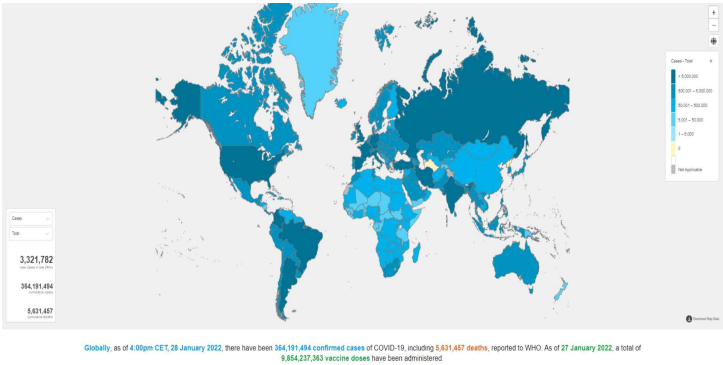
</td><td>〈지침관리팀〉
WHO GIS 현행화
확진환자 및 예방접종 현황</td></tr>
<tr><td>112</td><td>나. 국내
○ '21.12.21. 총 576,615명 발생, 4,828명 사망</td><td>나. ---
○ '22.1.30. 총 828,637명 발생, 6,732명 사망</td><td>〈지침관리팀〉
국내 현황 업데이트</td></tr>
<tr><td>128</td><td>7. 치료
○ 호흡 곤란 시 산소를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호흡이나 체외막 산소공급 등의 처치를 시행
○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베클루리주) 투여 가능
○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중 고위험군(50세 초과, 기저</td><td>7. 치료
○ ----------
○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 환자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베클루리주) 투여 가능
○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중등증 환자 중 고위험군~~(50세 초과, 기저질환자, 폐렴 소견)~~에 대하여 항바이러스제(베클</td><td>〈환자관리팀〉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내용 반영</td></tr>
</table>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질환자, 폐렴 소견)에 대하여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가능 ○ 상기 치료 이외에도 대증치료, 합병증에 대한 치료도 중요함 ○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발간한 「COVID-19 진료권고안(ver 2.0)」과 대한감염학회에서 발간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임상진료지침(2021. 5. 31. 업데이트)」 참고	루리주, 팍스로비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가능 ○ ---------- ○ ----------	
서 식			
136	격리통지서 수령증 확인사항 ① 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민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②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무선통신으로 연결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즉시 시설격리 조치(시설이용 비용 자부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③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의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격리 조치(시설이용 비용 자부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④ 본 격리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②·③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7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 ① ---------- ② 해외입국자가 격리 조치를 ---------- ③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자---------- ④ ----------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격리관리팀〉 해외입국자에 한하여 자가격리앱 설치 반영
137	격리통지서 수령증(공동격리자용) 확인사항 ① 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 ---------- ① ----------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민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②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무선통신으로 연결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즉시 시설격리 조치(시설이용 비용 자부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③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의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격리 조치(시설이용 비용 자부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④ 본 격리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②·③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7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⑤ 공동격리와 관련하여 사전에 고지하였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 ② 해외입국자가 격리 조치를 ---------- ③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자---------- ④ ----------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⑤ ----------	
138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5. 재택(자가) 치료 5.3 귀하의 원활한 병상배정을 위해 지자체(보건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귀하의 기저질환력 등 의료정보를 열람·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5. ---(---) --- 5.3 지자체(보건소)가 감염병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귀하의 기저질환력,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 의료정보를 조회하고 관련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역학조사팀〉 〈중수본 재택치료시스템팀〉 감염병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확진환자의 기저질환력, 국가건강검진 결과 및 검사 수치 정보 등 의료정보를 관련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동의 절차 추가
139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서식 6〉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역학조사팀〉 서식 명칭 변경 및 간소화 신규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see below)	(see below)	

현행(10-3판)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 의사환자 등으로 기 신고된 환자가 확진 시에는 감염병월보고 환자구분을 '확진환자'로 변경보고 후 기초역학조사서 등록
※ 등록 위치 :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 역학조사 -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조사자	관할시도		연락처	(사무실) 043 - -	신고기관 (보건소명, 의료기관명)	
	조사보건소			(핸드폰) 010 - -		
	조사자성명		조사일	____년 ____월 ____일		

확진번호		검사기관		격리종류/장소	□자가, □시설, □병원 ( )
확 진 일	____년 ____월 ____일	검 사 일	____년 ____월 ____일	격리시작일	____년 ____월 ____일

1. 인적사항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1.1 성명		1.2 주민등록번호	-	1.3 성별	○남 ○여
1.4 국적	○내국인 ○외국인(국적,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1.5 거주지 주소			
1.6 연락처	(환자) 010 - - / (보호자) 010 - -	1.7 직업	○ (직장명, 직장주소, 마지막 출근일: __월 __일) ○무직		
		1.8 의료기관 종사자	○예 ☞ □의사 □간호사 □기타 ○아니오		
1.9 등록장애인 여부	○ 예 ○ 아니오	1.10 장애유형	□ 지체 □ 정신 등	1.11 장애정도	□ 중증 □ 경증

2. 증상 및 기저질환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2.1 증상 유무 (확진 14일전부터 현재까지)	○ 있음 (* 2.2, 2.3 작성) ○ 없음	2.2 증상발생일	____년 ____월 ____일				
2.3 최초증상	□ 발열(주관적 호소 포함): ○ 있음 (_._ ℃) ○ 없음	□ 호흡기증상: ○ 있음 ☞ □기침 □가래 □인후통 □호흡곤란 ○ 없음	□ 호흡기증상 외: ○ 있음 ☞ □근육통 □두통 □오한 □미각소실 □후각소실 □기타( ) ○ 없음	□ 폐렴: ○ 있음 ☞ ○ 없음	흉부영상 확인여부 (CT/X-ray) ○ 예 ○ 아니오		
2.4 기저질환	○ 예 (기저질환 명) ○ 아니오	2.5 키/몸무게	____cm/ ____kg	2.6 임신 여부	○ 예 (__주) ○ 아니오	2.7 흡연 여부	○ 예 ○ 아니오
2.8 검사경위	○ 본인 판단 ○ 의사소견 및 권장 ○ 해외방문력(* 3.1 작성) ○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3.3 작성) ○ 가족/지인이 확진환자(* 3.2 작성)						
2.9 진단검사(Ct값)	실험기관		RdRp gene		E gene		N gene
2.10 예방접종	□접종여부: ○ 예 ○ 아니오	□접종장소: ○ 국내 (접종장소 명) ○ 국외 (접종국가 명)	□백신종류	1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기타 ( ) / 2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기타 ( ) / 3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기타 ( )	□접종일	___년 ___월 ___일 (1차) / ___년 ___월 ___일 (2차) / ___년 ___월 ___일 (3차)	

3. 추정 감염경로 (최초증상 발생일 14일전부터 현재까지, ☑표시 또는 기재)

3.1 해외 체류/방문	○ 유 ☞ 국가명 , 입국일 ____년 ____월 ____일		○ 무
3.2 확진자 접촉 ※필수입력	○ 유 ☞ 관계: □가족(동거인), □(직장)동료, □지인, □기타______, 이름:_____, 확진자번호:_____, 최종 접촉일: ____년 ____월 ____일		○ 무
3.3 추정 감염장소 ※필수입력	○ 의료기관/요양시설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 시설명 ※필수입력 (______)
	○ 주거시설	□자택 □거주시설	
	○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클럽/무도장/홀덤펍 □마사지업소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식당 □카페 □영화관/공연장/스포츠관람 □결혼식장 □장례식장 □노래연습장 □PC방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전통시장 □상점·백화점 □숙박시설 □기타	
	○ 사업장	□제조업 □건설업 □운송/물류업 □금융/서비스업 □농수산업 □도소매업 □콜센터 □기타	
	○ 집회/행사	□집회 □행사 □방문판매관련 등 설명회	
	○ 종교시설	□교회 □성당 □사찰 □기타	
	○ 교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학원	
	○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교정시설 □기타	
	○ 기타	□ 기타 (______)	
3.4 집단발병 관련 ※시도/권역 확인	○ 유 ☞ □가족/지인 □의료기관 의료기관 명 □사업장 사업장명 □요양·정신시설 요양·정신시설 명 □다중이용시설 시설명 □교육시설 학교·학원명 □종교시설 종교시설 명 □기타 집단시설 명		○ 무

(생략)

11판 개정(안)

서식 6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 의사환자 등으로 기 신고된 환자가 확진 시에는 감염병월보고 환자구분을 '확진환자'로 변경보고 후 확진자 조사서 등록
※ 등록 위치 :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 역학조사 -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조사자	관할시도		연락처	(사무실) 043 - -	신고기관 (보건소명, 의료기관명)	
	조사보건소			(핸드폰) 010 - -		
	조사자성명		조사일	____년 ____월 ____일		

확진번호		검사기관		격리종류/장소	□자가, □시설, □병원 ( )
확 진 일	____년 ____월 ____일	검 사 일	____년 ____월 ____일	격리시작일	____년 ____월 ____일

1. 인적 사항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1.1 성명		1.2 주민등록번호	-	1.3 성별	○남 ○여
1.4 국적	○내국인 ○외국인(국적,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1.5 거주지 주소			
1.6 연락처	(환자) 010 - - / (보호자) 010 - -				

2. 증상 및 기저질환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2.1 증상 유무 (확진 14일전부터 현재까지)	○ 있음 (* 2.2, 2.3 작성) ○ 없음	2.2 증상발생일	____년 ____월 ____일		
2.3 예방접종	□접종여부: ○ 예 ○ 아니오	□접종장소: ○ 국내 (접종장소 명) ○ 국외 (접종국가 명)	□백신종류	1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기타 ( ) / 2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기타 ( ) / 3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기타 ( )	□접종일: ___년 ___월 ___일 (1차) / ___년 ___월 ___일 (2차) / ___년 ___월 ___일 (3차)

3. 동거인 접촉자 (최초증상 발생일 2일전부터 현재까지 접촉한 가족 및 집단시설 접촉자, ☑표시 또는 기재)

3.1 동거인 접촉자	○ 유 (인원 수 : 명) ☞ 이름:_____, 관계:_____, 연락처: 010 -_____-_____ ※해당 인원 전부 입력	○ 무

4.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여부

4.1 장기요양기관	○ 예 ○ 아니오	4.2 정신건강시설	○ 예 ○ 아니오	4.3 장애인시설	○ 예 ○ 아니오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141	〈서식 7〉 코로나19 사례관리보고서(확진환자) 2. 신고 보고 현황 2.2 기초역학조사	〈서식 7〉 ---------- 2. ---------- 2.2 확진자 조사	〈역학조사팀〉 서식 6 기초역학조사서명칭 변경에 따름 신규
160	〈서식 23〉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확진환자)	(삭제)	〈역학조사팀〉 심층역학조사 업무 삭제 신규
161 ~ 162	[서식 24]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계획서 [서식 25]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결과서	(전체 삭제)	〈진단검사운영팀〉 우선순위에 따른 PCR 검사 체계로 검사전략 전환에 따른 개정
부 록			
157	〈서식 20의2〉	〈부록〉	〈환자관리팀〉 확진자 격리해제기준 변경에 따른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 수정, '서식 20의2'에서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서식 20의2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	부록 37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	'부록'으로 이동

현행(10-3판)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

■ 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해제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 되셨습니다.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 무증상자이면서,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 유증상자이면서,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48시간

<검사 기반 격리해제> - (공통사항)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 무증상자이면서,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 유증상자이면서,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호전 추세

■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된 경우, **추가적인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없습니다.**
☞ **단, 해제 후에도 PCR 검사 시 양성 반응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PCR 검사는 전파력이 없는 비활성 바이러스(죽은바이러스 찌꺼기 등)도 검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로서,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적법하게 발급된 격리해제확인서(보건소) 또는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일상생활, 의료기관이용, 직장 및 업무복귀 등이 가능**합니다.

■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의 **심리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 http://www.ncmh.go.kr/ncmh/main.do
- 근로자 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http://www.kosha.or.kr/kosha/business/healthcenter.do

■ **격리해제 후에도 위생수칙,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준수

※ 귀하께서 격리해제 당일 발열 등 코로나 관련 **증상이 느껴질 경우** 현장 의료진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발열(37.5℃ 이상), 기침,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11판 개정(안)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

■ 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해제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 되셨습니다.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부터 해제**
- (진단 시 무증상자)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 (진단 시 유증상자)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48시간
* **7일 후 격리해제 되신 경우 3일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셔야 하며,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은 제한하시고, 사적모임 등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기반 격리해제>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 (진단 시 무증상자)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 (진단 시 유증상자)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호전 추세

■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된 경우, **추가적인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없습니다.**
☞ **단, 해제 후에도 PCR 검사 시 양성 반응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PCR 검사는 전파력이 없는 비활성 바이러스(죽은바이러스 찌꺼기 등)도 검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로서,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적법하게 발급된 격리해제확인서(보건소) 또는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일상생활, 의료기관이용, 직장 및 업무복귀 등이 가능**합니다.

■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의 **심리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 http://www.ncmh.go.kr/ncmh/main.do
- 근로자 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http://www.kosha.or.kr/kosha/business/healthcenter.do

■ **격리해제 후에도 위생수칙,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준수

※ 귀하께서 격리해제 당일 발열 등 코로나 관련 **증상이 느껴질 경우** 현장 의료진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발열(37.5℃ 이상), 기침,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175	부록 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백신접종 예약을 하신 분은 격리해제 이후로 예방접종일을 연기합니다.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주세요.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되고,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격리 조치됩니다. (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 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 의무 - 모든 격리자는 격리 9~10일차에 PCR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된 경우 격리해제 됩니다. 음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격리해제 불가합니다. [자가모니터링 준수사항] ○ 능동감시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귀하가 확진환자와 접촉 후 1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의 발열, 증상을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삭제 ○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 ※ ---------- ○ ---------- - 격리자는 격리 6~7일차에 ---------- [----------] ○ ----------7일이 ----------	〈격리관리팀〉 해외입국자에 한하여 자가격리앱 설치 반영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릴 예정이니, 이때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을 알려주십시오.	○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 - 삭제	
176	부록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모든 격리자는 격리 9~10일차에 PCR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된 경우 격리해제 됩니다. 음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격리해제 불가합니다.	---- ---------- - ---------- 6~7일차에 ----------	〈격리관리팀〉 격리기간 단축(10→7일) 반영
179	부록 4의2 자가격리자를 위한 일반진료 안내문	삭제	〈격리관리팀〉 격리자 진료 규정 변경 반영
201	부록 9 코로나19 장례관리 및 시신처리 (전면 개정) ◆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잠재적인 전염성**이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표준주의' 원칙**을 적용하며, 일부 감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혈액, 체액 또는 시신의 조직과 접촉할 때 감염될 수 있으므로 **노출 최소화 방식으로 시신을 처리** 1. 일반 권장사항 (중간 생략) 3. 시신 관리	부록 9 코로나19 장례관리 및 시신처리	〈지침관리팀〉 장례지침 변경에 따른 수정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코로나19 시신의 감염위험과 감염예방 방법 > ▸ (**시신의 감염위험**) 코로나19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시신의 경우 감염위험이 감소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처리한 후 감염이 보고된 사례는 없으나, 시신의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 배출이 가능하므로 시신을 접촉하는 행위 시 적절한 방역조치 필요 ▸ (**장례시 감염요인과 예방방법**) ❶시신을 닦거나 옷을 입히는 등 위생관리시 처리자의 눈·코·입 등 점막에 시신의 체액이 닿는 경우 감염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접촉주의 필요(장갑, 긴팔가운, 마스크, 눈보호구), ❷시신에 대한 침습행위가 이루어지는 부검 또는 시신방부처리 등은 가급적 금하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공기주의 적용(KF94이상의 마스크, 모자, 신발커버, 시간당 10회 이상 환기·음압 필요) 1. 일반 권장사항 가. 감염예방 수칙 ○ 장례 업무를 하는 사람은 감염예방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받고, 올바른 손위생과 개인보호구 착탈의 방법에 대해 훈련받는다. ○ 시신의 혈액 또는 체액이 업무자의 경피 상처 또는 점막에 접촉된 경우 흐르는 물로 세척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며, 노출된 직원은 노출 후 관리를 위해 즉시 진료를 받는다. ○ 개인보호구, 손소독제, 소독티슈 등 방역물품은 사전에 구비하여 적소에 비치한다. ○ 오염된 환경 표면은 환경부에 승인·신고된 코로나19 살균력이 입증된 소독제▶로 소독한다. ▶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m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소독제를 준비하고, 일회용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후, 물에 적신 천으로 닦아낸다.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의 경우 1,000ppm 희석액 사용하고 1분 이상 소독제의 표면 접촉 유지 필요: 5% 차아염소산나트륨 10 ml + 물 490 ml - 금속표면은 70% 알코올로 닦을 수 있음 - 혈액 및 체액으로 눈에 띄게 오염된 표면은 소독제로 일정 시간 접촉 후 닦아낸다. ▶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의 경우 5,000ppm 희석액 사용하고 1분 이상 소독제의 표면 접촉 유지 필요: 5% 차아염소산나트륨 50 ml + 물 450 ml ※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은 매일 새로 희석해서 사용한다. **나. 세탁물 관리** ○ 사용된 모든 린넨은 표준격리로 처리 ○ 사용된 린넨은 린넨을 취급하는 사람의 오염을 방지하고 해당 구역에서 잠재적으로 오염된 보풀로 인한 에어로졸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휘젓기로 최대한 적게 다루어야 함 ○ 혈액 또는 체액으로 오염된 린넨은 뜨거운 온도에서(70℃ 이상) 세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새로 준비한 희석한 가정용 표백제(표백제 1: 물 49 혼합)에 세탁 전 30분 동안 담가둬야 함 **2. 환경관리** **가. 안치실, 염습실** ○ 항상 깨끗하고 적절하게 환기되어야 하며, 조명이 적절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 실시 ○ 부검실, 안치실, 유족 참관실에서는 흡연, 음주, 식사가 금지 ○ 코로나19 시신은 식별 레이블 및 범주 태그로 식별가능하게 해야 함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시신은 입관 전까지 시신백에 보관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방하고 개방범위와 시간을 최소화함 **나. 부검실** ○ 모든 시신은 잠재적인 감염원으로 간주하고 부검 수행 시 표준주의 원칙을 지켜야 함 ○ 부검 시 침습적인 절차에 의해 체액으로 인한 감염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행하며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함 -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권장되는 기술과 절차를 사용하여 부검의에 의해 수행 - 부검실에서 허용되는 인원은 수술과 직접 관련된 인원으로 제한 - 시신백 외부는 환경부에 승인된 코로나19에 유효한 살균·소독제로 닦아서 건조시킴 **다. 보호구 탈의구역** • 충분한 공간(팔을 뻗었을 때 접촉되는 면이 없도록) 확보 • 구비물품; 전신거울, 소독티슈, 손소독제, 폐기물함, 탈의 절차(게시) • 거울앞에서 절차에 따라 제거하여 폐기물함에 폐기(마스크는 장소이동하여 제거) • 사용 후 충분히 환기, 소독 실시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예시) 보호구 탈의구역 장소별 설정(염습실 내부 또는 염습실 외부 또는 옥외) ◆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잠재적인 전염성이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표준주의 원칙'을 적용하며, 일부 감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혈액, 체액 또는 시신의 조직과 접촉할 때 감염될 수 있으므로 노출 최소화 방식으로 시신을 처리	
228	**부록 13 (붙임3)**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물품 ○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물품은 ①폐기물 소독제 ②의료폐기물 전용봉투(주황색 봉투) ③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 ④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입니다. □ 생활치료센터 격리자 발생 폐기물 배출방법 - 격리의료폐기물 ○ 격리실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분리배출 필요 없이 제공되는 전용봉투(주황색 봉투)에 담기 전 전용봉투 내부를 1차 소독, 폐기물을 담은 후 2차 소독하여 반드시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묶어주시고, ○ 제공되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에 전용봉투(주황색 봉투)를 넣고,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의 뚜껑을 닫기 전 소독 후, 뚜껑을 닫아 밀폐하여 주시	**부록 13 (붙임3)**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물품 ○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물품은 ①폐기물 소독제 ②폐기물 분류(일반, 음식물, 재활용 등) 봉투 입니다. □ 생활치료센터 격리자 발생 폐기물 배출방법 - 생활폐기물* **※ 다만, 확진자 치료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주사기, 혈액이 묻은 폐기물 등)은 <u>격리의료폐기물로 계속 처리</u>** ○ 격리실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분리배출(일반, 음식물, 재활용 등) 해야 하며, 제공되는 봉투에 담기 전 봉투 내부를 1차 소독, 폐기물을 담은 후 2차 소독하여 반드시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 퇴소 시 격리실 문 앞에 배출하기 전 외부 전체를 1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처리 지침 변경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기 바랍니다. ○ 밀폐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은 격리실 문 앞에 배출하기 전 외부 전체를 1회 더 소독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의 뚜껑이 완전히 닫힌 후 배출되어야 수거가 가능하며, ○ 배출된 폐기물은 매일 수거자가 수거하여 '생활치료센터' 내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생활치료센터 운영인력 등 발생 폐기물 처리방법 - 일반의료폐기물 ○ 운영인력 사용공간 및 숙소 등 발생 폐기물, 확진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폐기물(도시락 및 구호물품 박스 등)은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하며, ○ 분리배출 없이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주황색 봉투)에 넣고 밀봉하기 전 소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 소독 후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전용봉투(주황색 봉투)를 묶은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에 넣어 밀봉해야 합니다. ○ 밀봉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는 수거 전 외부 전체를 1회 더 소독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배출된 폐기물은 매일 수거자가 수거하여 '생활치료센터' 내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회 더 소독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소시 배출된 폐기물은수거자가 수거하여 분류배출하여야 합니다. □ 생활치료센터 운영인력 등 발생 폐기물 처리방법 - 생활폐기물 ○ 운영인력 사용공간 및 숙소 등 발생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며, ○ 폐기물은 종류(일반, 음식물, 재활용)별로 분리 후 배출해야 합니다. ○ 배출된 폐기물은 매일 수거자가 수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230	부록14.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 입국자 명단 통보 체계 ○ ~ ○ 해외 입국자 중 인천공항 외 공항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	부록14.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 입국자 명단 통보 체계 ○ ~ ○ 해외 입국자 중 인천공항 외 공항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	〈해외출입국관리팀〉 격리기간 단축(10일->7일)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국인은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에서 10일 동안 시설격리 ▶ 항만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 선원 등은 해수부 운영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동안 격리 * 시설격리 중 중도퇴소는 해수부 시설 운영 지침에 따름 * 인천공항 외 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시설격리가 필요한 자의 명단은 관할 검역소에서 검역소 관내 시도로 공유	국인은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에서 7일 동안 시설격리 ▶ 항만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 선원 등은 해수부 운영 임시생활시설에서 7일 동안 격리 * 시설격리 중 중도퇴소는 해수부 시설 운영 지침에 따름 * 인천공항 외 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시설격리가 필요한 자의 명단은 관할 검역소에서 검역소 관내 시도로 공유	
231	부록14.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10일간 자가격리 및 검사 시행 ~ ○ 단기체류 외국인(항만 선원 제외)의 경우 지자체 단계에서 감시기간(10일) 시설격리에 따른 격리시설 운영 및 입국 후 1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인천공항 외 공항으로 입국한 경우)	부록14.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 및 검사 시행 ~ ○ 단기체류 외국인(항만 선원 제외)의 경우 지자체 단계에서 감시기간(7일) 시설격리에 따른 격리시설 운영 및 입국 후 1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인천공항 외 공항으로 입국한 경우)	〈해외출입국관리팀〉 격리기간 단축(10일->7일)
231	□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 대상자에게 자가격리 유의사항 안내(자가격리 안내문 및 자가격리 키트 등)	□ ---------- - ----------(자가격리 안내문 등)	〈격리관리팀〉 자가격리 키트 보급 폐지
246 ~ 257	부록 20. 신속항원검사 대응 및 조치방안 부록 20. (붙임1)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안내사항 부록 20. (붙임1)(첨부1)코로나19 검체 채취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부록 20. (붙임1)(첨부2) 신속항원검사 허가 시약 사용목적 및 사용시 주의사항 부록 20. (붙임2) 신속항원검사 관련 Q&A 부록 21. 자가검사 대응 및 조치 방안 부록 21. (붙임1) 코로나감염증-19 자가검사 관련 안내사항 부록 21. (붙임2) 자가검사 관련 Q&A	부록 20. (이하 전체 삭제) 부록 20. (붙임 1) (이하 전체 삭제) 부록 20. (붙임1)(첨부1) (이하 전체 삭제) 부록 20. (붙임1)(첨부2) (이하 전체 삭제) 부록 20. (붙임2) (이하 전체 삭제) 부록 21. (이하 전체 삭제) 부록 21. (붙임1) (이하 전체 삭제) 부록 21. (붙임2) (이하 전체 삭제)	〈진단총괄팀〉 신속항원검사 관련 별도 지침으로 안내
262	〈부록 23〉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방안	〈부록 23〉 ----------	〈역학조사팀〉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시 반려동물 관리방안 ○ 반려동물의 코로나19 양성 판정 시(동물담당부서→보건부서) - 노출된 수의사 및 보호소 등 관련 노출자에 대한 기초역학조사(보건부서)	□ ---------- ○ ---------- - ---------- 조사(보건부서)	환자관리팀 소관, 기초역학조사→조사로 용어만 변경 신규
265	〈부록 25〉 외국인 확진환자용 기초/심층역학조사서 작성 원칙	〈부록 25〉 ---- 확진자 조사서 작성 원칙 **부록 25** **외국인 확진자 조사서 작성 원칙** □ **역학조사 정보 및 자료 입력 시 기본원칙** ○ 코로나19 외국인 확진환자 중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확진자 대상 ○ 1차적으로 본인이 작성할 것 ○ 통역지원자 도움받아서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검토·추가 □ **확진자 조사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인적사항 -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경우 : 앞칸에는'생년월일'기입, 뒷칸에는'5000000'기록 * (보건소 담당자 업무) 뒷자리의 첫 자리는 임의로 '5(1900년대생 외국국적 남성), 6(1900년대생 외국국적 여성), 7(2000년대생 남성), 8(2000년대생 여성)'로 입력 - 거주지 주소 : 현재 거주지 주소 2. 증상 - 증상 유무, 증상발생일, 예방접종 등 3. 가족(동거인) 접촉자 - 최초증상 발병일 2일전부터 현재까지 가족(동거인) 접촉자 파악을 위함	〈역학조사팀〉 외국인 확진자 조사서 원칙 안내 신규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부록 25 외국인 확진환자용 기초/심층역학조사서 작성 원칙 □ 역학조사 정보 및 자료 입력 시 기본원칙 ○ 코로나19 외국인 확진환자 중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확진자 대상 ○ 1차적으로 본인이 '기초, 심층역학조사서' 필수항목 중심으로 작성할 것 - 필수기재항목(총 21개 항목: 음영) 은 반드시 기재 ○ 통역지원자 도움받아서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검토·추가 □ 기초/심층 역학조사서 필수항목 작성 시 주의사항 1. 인적사항 - 1.2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경우 : 앞칸에는'생년월일'기입, 뒷칸에는'5000000'기록 * (보건소 담당자 업무) 뒷자리의 첫 자리는 임의로 '5(1900년대생 외국국적 남성), 6(1900년대생 외국국적 여성), 7(2000년대생 남성), 8(2000년대생 여성)'로 입력 - 1.5 거주지 주소 : 현재 거주지 주소 - 1.7 직업 : 직장명 또는 학교명, 주소, 연락처 기록 2. 증상 및 기저질환 - 2.1 증상 유무, 2.2 증상발현일, 2.3 최초증상 종료 반드시 체크 3. 추정 감염경로 - 3.2 확진자 접촉 : 최초증상 발병일 14일전부터 현재까지 만났던 선행확진자의 이름, 관계 기록 - 3.4 기타 : 추정감염경로 관련 기타사항 작성 4. 집단시설 이용력 - 최초증상 발병일 14일전부터 현재까지 본인이 숙식 생활한 집단시설명 기록 5. 가족 및 집단시설 접촉자 - 최초증상 발병일 2일전부터 현재까지 가정, 집단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접촉자 파악을 위함 - 각 시설별로 장소와 접촉자 규모 작성		
264	〈부록 26〉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	〈부록 26〉 ----------	〈역학조사팀〉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부록 26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밀접접촉자용)]** 귀하께서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이나,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실거주지 보건소의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를 제시).** ▶ **수동감시 관리 절차** ① **(밀접접촉 확인 시)**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력 알리기,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② **(PCR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③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수동감시 조건 충족 시)** 수동감시 실시 ▶ (예방접종미완료자 또는 수동감시 조건 미충족) 자가격리 전환 ④ **(수동감시 기간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 시행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단,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방역관(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격리해제 전 검사 등) - 접촉일로부터 10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 ▶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⑤ **(수동감시 종료)**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 해제 ▶ **수동감시 대상 조건**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 **예방접종완료자** :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 ① 2차 접종완료자(얀센의 경우 1차 접종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부터 6개월(180일) 이하인 자 ▶ 180일 경과 후 3차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완료자에서 제외 ② 3차 접종완료자(얀센의 경우 2차 접종완료자) : 3차 접종을 한 후 14일이 경과한 자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 단, 3차 접종완료자는 ③ 조건 적용되지 않음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고위험집단시설 이외에서 확진자 발생 시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선파 및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격리 가능 ▶ **접촉자 분류 시 함께 통지**	**부록 26**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 **[접촉자 분류 시 안내문]** 귀하께서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이나, 아래 '격리조치 및 수동감시 대상자' 중 수동감시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실거주지 보건소의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를 제시).** ▶ **수동감시 관리 절차** ① **(밀접접촉 확인 시)**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력 알리기,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② **(PCR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③ **(수동감시 대상자에 해당)** 수동감시 실시 ▶ **격리조치 및 수동감시 대상자** 구분 / 대상자 수동감시: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접종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자 수동감시: 3차 접종자, 2차 접종 완료 전후 코로나19 감염력이 인정된 자 격리조치: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격리조치: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 감염취약시설 3종 :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 개별격리 불가능할 경우, 공동집단(코호트) 격리 ▶ 단, 지자체 방역관은 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및 지역사회 발생 규모 고려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로 조정 가능 ▶ **수동감시 예외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름 ④ **(수동감시 기간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 시행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단,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방역관(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격리해제 전 검사 등) - 접촉일로부터 7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 ▶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⑤ **(수동감시 종료)**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로부터 7일이 또는 날 자정(24:00)에 수동감시 해제 ▶ **접촉자 분류 시 함께 통지**	부록 내 격리조치 및 수동감시 대상자 내용 안내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273	부록 29 / 생활치료센터 진료지원시스템 운영 현황('21.10.28. 기준)	부록 29 / 생활치료센터 진료지원시스템 운영 현황('21.12.31. 기준)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 퇴소기준 변경 및 입퇴소 이동수단 변경사항 반영

현행(10-3판)

부록 29 **생활치료센터 진료지원시스템 운영 현황('21.10.28. 기준)**

□ 생활치료센터 90개소 중 73개소 사용 중

구분	개소일	센터 수(시설명)	협력병원	운영현황	비고*
합계 (90)		총 90개소		73개소 사용	81.1%
수도권		총 63개소		49개소 사용	
중수본 (10)	21.07.10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아산충무병원	등록(7.10)	EMR연계(검토)/①
	20.12.19	광주 DB인재개발원	분당제생병원	등록(12.19)	
	20.12.20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남양주한양병원	등록(12.20)	
	21.03.19	광주 고용노동교육원	강남병원	등록(3.19)	
	20.06.02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등록(12.9)	
	21.07.08	건보인재개발원	제천명지병원	등록(7.8)	
	21.07.12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천안충무병원	등록(7.12)	EMR연계(검토)/①
	21.07.13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평택박애병원	등록(7.13)	
	21.07.19	사회복무연수원	보은한양병원	등록(7.19)	
	21.07.19	근로복지공단인재개발원	진천성모병원	등록(7.19)	
서울시 (36)	20.06.04	남산 유스호스텔	보라매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20.08.19	노원 태릉선수촌	서울의료원	자체 시스템 이용	
	20.11.19	은평 서울소방학교	은평성모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20.11.23	용인 SK아카데미	서남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20.11.28	성남 코이카연수원	서울 동부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20.09.09	노원 한전인재개발원	서울대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21.01.14	서울대생활치료센터		자체 시스템 이용	
	21.07.16	연세대학교 기숙사 (연세대우정원)	세브란스병원	등록(7.15)	
	21.04.19	삼성국제경영연구소	서울적십자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등록·종료(4.19)
	21.07.07	국립국제교육원	녹색병원	등록(7.7)	
	21.07.09	소망교회수양관	보라매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21.07.12	청계센터(베뉴지)	건국대병원	등록(7.9)	
	21.07.14	새마을연수원	서울대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21.07.30	프레이저플레이스호텔	경희의료원	자체 시스템 이용	
	21.10.05	동호로센터	삼성서울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자치구 생치 21개소		21개소 사용	
인천시 (6)	20.09.09	인천 체육공단경정훈련원	인천성모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21.07.14	인천 SK무의연수원	한림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등록(7.14)·종료(8.1)
	20.12.23	하나금융 하나글로벌캠퍼스	김포우리병원	등록(12.22)	
	21.07.19	청라베네요양병원	청라베네요양병원	등록(7.17)	
	21.07.21	포스코 인재창조원	나은병원	등록(7.21)	
	21.09.27	강화 신화유스호스텔	강화병원	등록(9.27)	
경기도 (11)	20.08.24	이천 경기도교육연수원	다보스병원	등록(12.3)	
	20.08.24	고양 삼성화재글로벌캠퍼스	명지병원	등록(12.7)	
	20.11.26	용인 한화생명	용인 강남병원	등록(11.29)	협력병원변경(9.13)
	20.12.04	이천 국방어학원	다보스병원	등록(12.4)	
	20.12.11	이천 LG인화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등록(12.11)	
	20.12.15	이천 SK텔레콤인재개발원	성남시의료원	등록(12.15)	
	21.07.14	경기대학교 기숙사 (경기대학교드림센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등록(7.14)	
	21.01.04	동양인재개발원	부천세종병원	등록(12.28)	
	21.04.27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등록(4.26)	
	21.09.15	기아오산교육센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등록(9.13)	외국인 전용센터로 운영(10.15)
	21.09.28	김포펜탁기숙사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등록(9.27)	

11판 개정(안)

부록 29 **생활치료센터 진료지원시스템 운영 현황('21.12.31. 기준)**

□ 생활치료센터 94개소 중 77개소 사용 중(81.9%)

구분	개소일	센터 수(시설명)	협력병원	운영현황	비고*
합계		총 94개소		사용(77)	81.6%
수도권		총 67개소		사용(53)	
중수본	20.12.19	(거점) 광주 DB인재개발원	분당제생병원	등록(12.19)	
	20.12.20	(거점) 연천한반도통일미래센터	남양주한양병원	등록(12.20)	
	21.07.19	(거점) 진천근로복지공단인재개발원	진천성모병원	등록(7.19)	
	21.12.27	(거점) 천안상록리조트	홍성의료원	등록(12.27)	제12중앙생치센터
	20.06.02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등록(12.9)	
	21.03.19	광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강남병원	등록(3.19)	
	21.07.08	제천 건보인재개발원	제천명지병원	등록(7.8)	
	21.07.10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아산충무병원	등록(7.10)	EMR연계
	21.07.12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천안충무병원	등록(7.12)	EMR연계
	21.07.13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평택박애병원	등록(7.13)	
	21.07.19	보은사회복무연수센터(충북공동)	보은한양병원	등록(7.19)	
서울시	20.06.04	(거점) 남산 유스호스텔	보라매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20.08.19	(거점) 노원 태릉선수촌	서울의료원	자체 시스템 이용	
	21.01.14	(거점) 서울대생활치료센터	서울대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21.10.05	(거점) 동호로센터	삼성서울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동호생활치료센터
	21.12.27	(거점) 고대안암캠퍼스	여의도성모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21.07.12	(소아) 청계센터(베뉴지)	건국대병원	등록(7.9)	
	21.07.30	(소아) 남대문생활치료센터	경희의료원	자체 시스템 이용	프레이저플레이스호텔
	20.09.09	(거점) 노원 한전인재개발원	서울대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20.11.19	(외국인) 은평 서울소방학교	은평성모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20.11.23	용인 SK아카데미	서남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20.11.28	성남 코이카연수원	서울 동부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21.04.19	삼성 국제경영연구소	서울적십자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21.07.07	국립국제교육원	녹색병원	등록(7.7)	
	21.07.09	소망교회수양관	보라매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21.07.14	새마을연수원	서울대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21.07.16	연세대학교 기숙사	세브란스병원	등록(7.15)	연세대우정원
	21.12.25	시립대기숙사	세란병원	등록(12.25)	
		자치구 21개소		등록(39), 사용(20)	
인천시	20.09.09	인천 체육공단경정훈련원	인천성모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20.12.23	하나금융 하나글로벌캠퍼스	김포우리병원	등록(12.22)	
	21.07.14	인천 SK무의연수원	한림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21.07.21	포스코 인재창조원	나은병원	등록(7.21)	
	21.09.27	강화 신화유스호스텔	강화병원	등록(9.27)	
	21.12.06	서구 크리스탈 호텔	온누리병원	등록(11.2)	
	21.12.22	인천대학교제1기숙사	나은병원	등록(12.22)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273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 퇴소기준 변경 및 입퇴소 이동수단 변경사항 반영

현행(10-3판)

구분	개소일	센터 수(시설명)	협력병원	운영현황	비고*
비수도권		총 27개소		24개소 사용	
충청권 (1)	21.08.31	농협보험교육원	충남대 세종병원	등록(8.31)	
경남권 (2)	20.12.02	경남 KB손해보험연수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등록(12.4)	EMR연계 / ①②
	21.04.21	양산 에덴벨리리조트	양산부산대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등록(4.21) · 종료(8.1)
경북권 (2)	21.06.09	대구 중앙교육연수원	계명대동산병원	등록(6.9.)	
	21.08.26	문경STX리조트	김천의료원	등록(8.26)	
호남권 (2)	21.07.17	전남인재개발원	강진의료원	등록(7.18)	
	21.09.0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대병원	등록(9.1)	
부산시 (3)	20.12.07	부산 인재개발원	부산광역시의료원	등록(12.15)	EMR연계 / ①②③
	21.07.25	제4호센터(커넥트호텔)	동아대병원	등록(7.24)	
	21.08.18	토요코인해운대	해운대백병원	등록(8.18)	
울산시 (2)	21.01.31	부산은행연수원	울산대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①
	21.08.17	토요코인울산	울산대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광주시 (1)	20.12.24	광주 소방학교생활관	광주지자체운영	등록(12.24)	①②③④
대전시 (2)	21.07.26	한국발전인재개발원	건양대학교	등록(7.26)	
	21.08.19	KT인재개발원	대전성모병원	등록(8.19)	
강원도 (3)	20.07.16	속초서울시공무원수련원	강원대학교병원	등록(7.16)	
	21.07.25	국회 고성연수원	강원대학교병원	등록(7.24)	
	21.09.02	국립 평창청소년수련원	강원대학교병원	등록(9.2)	
대구시 (1)	21.08.11	경주 현대차연수원	파티마병원	등록(8.11)	
경북도 (1)	21.07.30	농협 구미교육원	안동의료원	등록(7.30)	
경남도 (1)	21.07.30	창원대 기숙사	창원한마음병원	등록(7.30)	
전북도 (2)	21.07.29	전북 인재개발원	남원의료원	등록(7.29)	
	21.08.25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군산의료원	등록(8.25)	
전남도 (1)	21.08.02	한전 KPS 인재개발원	나주빛가람병원	등록(8.2)	
충남도 (1)	21.07.23	중앙소방학교	공주의료원	등록(7.23)	
제주도 (2)	21.08.21	국제공무원교육원	제주대학교병원	등록(8.21)	
	21.10.21	마이테르유스호스텔	제주대학교병원	등록(10.20)	

* 블루투스 연동 생체측정장비 사용현황 : ①체온계, ②혈압계, ③혈당계, ④산소포화도 측정기

11판 개정(안)

구분	개소일	센터 수(시설명)	협력병원	운영현황	비고'
경기도	20.12.04	(불공용) 이천국방어학원	다보스병원	등록(12.4)	
	21.01.04	(외국인) 동양인재개발원	부천세종병원	등록(12.28)	
	20.08.24	(외국인) 삼성화재글로벌캠퍼스	명지병원	등록(12.7)	
	21.09.28	(외국인) 김포팬택기숙사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등록(9.27)	
	21.09.15	(외국인) 기아오산교육센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등록(9.13)	
	20.12.11	(외국인) 이천 LG인화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등록(12.11)	
	21.04.27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	용인 강남병원	등록(4.26)	
	20.11.26	용인한화생명라이프파크	용인 강남병원	등록(11.29)	협력병원변경(9.13)
	20.08.24	이천 경기도교육연수원	다보스병원	등록(12.3)	
	20.12.15	이천 SK텔레콤인재개발원	성남시의료원	등록(12.15)	
	21.12.20	평택 라마다호텔	포천병원	등록(12.20)	
비수도권		총 27개소		사용(24)	
강원도	20.07.16	속초서울시공무원수련원	강원대학교병원	등록(7.16)	
	21.07.25	국회 고성연수원	강원대학교병원	등록(7.24)	
	21.09.02	국립 평창청소년수련원	강원대학교병원	등록(9.2)	
충청권	21.08.19	(대전) KT인재개발원	대전성모병원	등록(8.19)	
	21.07.23	(충남) 중앙소방학교	공주의료원	등록(7.23)	
	21.08.31	(세종) 농협보험교육원	충남대 세종병원	등록(8.31)	
호남권	21.07.17	(중수본) 전남인재개발원	강진의료원	등록(7.18)	
	20.12.24	(광주) 소방학교생활관	조선대학교	등록(12.24)	
	21.09.01	(광주) 호남연수원	전남대병원	등록(9.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1.07.29	(전북) 인재개발원	남원의료원	등록(7.29)	
	21.08.25	(전북)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군산의료원	등록(8.25)	
	21.08.02	(전남) 한전 KPS 인재개발원	나주빛가람병원	등록(8.2)	
경북권	21.06.09	(중수본) 대구중앙교육연수원	계명대동산병원	등록(6.9.)	
	21.08.26	(경북) 문경STX리조트	김천의료원	등록(8.26)	
	21.07.30	(경북) 농협구미교육원	안동의료원	등록(7.30)	
	21.08.11	(대구) 경주현대차연수원	경북대병원	등록(8.11)	
경남권	21.04.21	(중수본) 양산에덴벨리리조트	양산부산대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20.12.07	(부산) 부산인재개발원	부산광역시의료원	등록(12.15)	EMR 연계
	21.07.25	(부산) 민간호텔(4호센터)	동아대병원	등록(7.24)	커넥트호텔
	21.08.18	(부산) 토요코인해운대	해운대백병원	등록(8.18)	
	21.12.10	(부산) 토요코인서면	부산백병원	등록(12.10)	제7생활치료센터
	21.01.31	(울산) 부산은행연수원	울산대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21.08.17	(울산) 울산 제2생치	울산대병원	자체 시스템 이용	토요코인
	21.07.30	(경남) 창원대 기숙사	창원한마음병원	등록(7.30)	
	21.08.18	(경남) (구)창원한마음병원	창원한마음병원	등록(7.30)	
제주도	21.10.21	마이테르유스호스텔	제주대학교병원	등록(10.20)	
	21.12.20	그랜드힐리언스호텔	제주대학교병원	등록(12.20)	

* 블루투스 연동 생체측정장비 사용현황 : ①체온계, ②혈압계, ③혈당계, ④산소포화도 측정기

<table>
<tr><th>쪽</th><th>현행(10-3판)</th><th>1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274</td>
<td>
<table>
<tr><td>부록 30</td><td>증상발생일 기준 7일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 대상자 명단 양식(엑셀 서식)</td></tr>
</table>

□ 업무연락 예시

수신 : 000 시군구 자가격리 모니터링 전담부서

제목 : 퇴소 후 자가격리(예정자) 명단 통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귀 시군구의 노고에 감사

2. 중앙사고수습본부-30606 공문('21.09.25.)에 따라 우리 생활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

○ 증상발현일 기준 7일차(무증상은 확진일 7일차) 환자
- 생활치료센터는 퇴소가능명단(이동수단, 퇴소복, 자가격리앱설치
  * 메일 발송시 발송자 성함, 연락처 기재
- 관할 시군구는 자가격리 주소지 확인, 자가격리 적정검토 후

붙임. 퇴소 후 관리 대상자 명단 1부. 끝.

<table>
<tr><th colspan="10">생활치료센터 작성</th><th>모니터링 전담부서 작성</th></tr>
<tr><td>연번</td><td>퇴소 예정일</td><td>퇴소 예정 시간</td><td>입소일</td><td>이름</td><td>생년월일</td><td>연락처</td><td>격리통지서상 격리 예정 자택 주소</td><td>증상발생일 (무증상자는 확진일)</td><td>격리 해제일</td><td>자가격리 적정성</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예) 세종시 도움4로 O아파트 O동 O호</td><td></td><td></td><td></td></tr>
</table>
</td>
<td>(삭 제)</td>
<td>〈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 퇴소기준 변경 및 입퇴소 이동수단 변경사항 반영</td></tr>
</table>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289	〈부록 34〉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문 □ 일일 신규 확진자 명단 업로드 (생략) - 신규 확진환자 명단 업로드 시 기초역학조사서 신고내용을 토대로 "관할 보건소"와 "신고 보건소"를 지정. 즉, 신고 보건소의 시·군·구와 해당 환자의 주소지 시·군·구가 같다면 시스템상 '관할 보건소'와 '신고 보건소'가 같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르게 표시됨. 또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은 채로 신고된 경우 '관할 보건소'는 비어있는 채로 표시됨 -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역시, 기초역학조사서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업로드. 특히 외국인의 경우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잘못 신고된 경우가 많습니다만, 수시로 확인해 바른 정보로 수정 중 □ 첫 병상 배정결과 입력 ○ (각 시·도 담당)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역학조사서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관할 보건소가 정해지며 해당 환자는 시·도 환자로 배정. 각 시·도는 배정된 환자에 대해 첫 병상배정결과를 입력(중증도(진단상태) 포함) - 기초역학조사서 신고내용을 토대로 관할이 정해지므로 우리 시·도에서 첫 병상을 배정한 환자가 보이지 않을 수도, 타 시·도에서 배정했을 환자가 보일 수도 있음. 이럴 때는 각각 아래와 같은 조치 필요	〈부록 34〉 ---------- □ ---------- - ---------- 확진자 조사서 ---------- ---------- ---------- ---------- ---------- --------- - ---------- 확진자 조사서의 ---------- ---------- ---------- □ ---------- ○ (---------) ---------- 확진자 조사서의 ------- ---------- ---------- ---------- - 확진자 조사서 ---------- ---------- ---------- --------	〈역학조사팀〉 환자관리팀 소관, 기초역학조사→조사로 용어만 변경 신규
275	(신설)	〈부록 36〉 기타 시설 확진자(산발·집단) 발생 시 역학조사 대응	〈역학조사팀〉 기타 시설 확진자(산발·집단) 발생 시 역학조사 대응 안내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부록 36 기타 시설 확진자(산발·집단) 발생 시 역학조사 대응 **가. 기본 원칙 : 시설별 자체 대응 원칙** ○ (시설별 방역관리자)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에 따라 ① 접촉자 조사, ② 신속항원검사(RAT) 안내, ③ RAT 2회(Day1, Day 3)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출근·등교 제한 권고 ▶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 - 동일 공간에서 근무/생활하는 구성원(예 동일학급원, 동일 부서원, 동일 숙소 호실 생활자) -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나. 2회 신속항원 검사(RAT) 2회 실시 또는 안내** ○ 검사 장소 : 시설 자체 또는 의료기관, 보건소 선별진료소 ○ 검사 횟수 : 2회[접촉자 분류 당일(1일차), 3일차] ○ 검사결과 후속 조치 : RAT 양성자는 PCR 검사 실시 ▶ (예시) 접촉자 분류 당일(1일차) RAT 검사결과 후속 조치 ① RAT 양성 → PCR 검사 → PCR 양성 → 확진자로 관리 ② RAT 양성 → PCR 검사 → PCR 음성 → 3일차 RAT 검사 ③ RAT 음성 → 3일차 RAT 검사▶ ▶ RAT 검사결과에 따른 대응 - RAT '양성' : PCR 결과 확인 시까지 출근/등교 제한 권고 - RAT '음성' : 최종 노출일로부터 10일간 KF 94급 이상 마스크 착용 후 밀접접촉 최소화하면서 출근, 생활 가능	
부록 38 285	(신설)	부록 38 PCR 검사 우선순위 및 증빙자료 예시	〈진단총괄팀〉 우선순위에 따른 PCR 검사 체계로 전환에 따른 개정, 관련 증빙자료 예시 부록으로 추가

<table>
<tr><th>쪽</th><th>현행(10-3판)</th><th>1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td><td></td><td>
<table>
<tr><th colspan="2">우선순위 검사 대상</th><th>증빙자료 예시</th></tr>
<tr><td>만 60세 이상 고령자</td><td>만 60세 이상 고령자</td><td>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td></tr>
<tr><td>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td><td>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td><td>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 기록지 등</td></tr>
<tr><td rowspan="3">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td><td>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td><td>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td></tr>
<tr><td>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td><td>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td></tr>
<tr><td>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td><td>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td></tr>
<tr><td rowspan="4">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td><td>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td><td>재직증명서, 사원증 등</td></tr>
<tr><td>외국인보호시설 · 소년보호기관 · 교정시설 입소자</td><td>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td></tr>
<tr><td>휴가 복귀 장병</td><td>휴가증</td></tr>
<tr><td>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td><td>입원 관련 증빙서류</td></tr>
<tr><td>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td><td>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td><td>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td></tr>
</table>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td><td></td></tr>
<tr><td colspan="4">Q&A</td></tr>
</table>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298	Q7. 지역사회 감염이 무엇인가요? ○ 지역사회 감염은 지역사회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였지만 발생 지역 방문이나 확진자와의 접촉력 없이, 언제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감염을 말합니다.	~~Q7. 지역사회 감염이 무엇인가요?~~ ~~○ 지역사회 감염은 지역사회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였지만 발생 지역 방문이나 확진자와의 접촉력 없이, 언제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감염을 말합니다.~~	〈지침관리팀〉 삭제
298	Q8. 음식을 통해 코로나19가 전염될 수 있나요? ○ 현재까지 코로나19가 음식을 통해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바이러스가 있는 음식의 포장 용기 표면이나 물체를 만진 후 자신의 입, 코 또는 눈을 만지면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지만, 물체의 표면에서 이러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식품이나 포장 용기를 통해 확산될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음식을 준비하거나 먹기 전에 비누와 물로 30초 동안 손을 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7. 음식을 통해 코로나19가 전염될 수 있나요? ○ 현재까지 코로나19가 음식을 통해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바이러스가 있는 음식의 포장 용기 표면이나 물체를 만진 후 자신의 입, 코 또는 눈을 만지면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지만, 물체의 표면에서 이러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식품이나 포장 용기를 통해 확산될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음식을 준비하거나 먹기 전에 비누와 물로 30초 동안 손을 씻고 음식을 먹든 동안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대화를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침관리팀〉 수정
300	2. 증상 Q1.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	Q1.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	〈지침관리팀〉 수정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이러한 증상은 보통 경미하고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매우 약한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5명 중 1명 정도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고혈압, 심폐질환,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러한 증상은 보통 경미하고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매우 약한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일부에서 ~~5명 중 1명 정도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고혈압, 심폐질환,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00	**Q2. 무증상환자도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나요?** ○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방법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전염되는 것입니다. ○ 코로나19의 많은 환자들은 가벼운 증상만을 경험하지만, 증상이 가벼운 환자의 일부는 질환의 초기라서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미한 기침 증상만 있거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전염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무증상의 경우에도 전염이 가능하다는 연구가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추가 연구결과가 발표되면 공유할 예정입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Q2. 무증상환자도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나요?** ○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방법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전염되는 것입니다. ○ 코로나19의 많은 환자들은 가벼운 증상만을 경험하지만, 증상이 가벼운 환자의 일부는 질환의 초기라서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미한 기침 증상만 있거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전염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삭제)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지침관리팀〉 수정

<table>
<tr><th>쪽</th><th>현행(10-3판)</th><th>1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302</td><td>3. 검사
Q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td><td>3. --
Q1. --- PCR 검사를 ----------
○ 본 지침상의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록 38 참고)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⑤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td><td>〈진단총괄팀〉
사례정의 개정 내용 반영 필요</td></tr>
<tr><td></td><td>○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 및 2 등급)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또는 시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 응급분만환자의 경우 응급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td><td>○ 이 외 응급(분만)환자, 입원(소)환자, 독감의심환자 등에게는 관련 건강보험 법령에서 정한 급여범위에 따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td><td>〈중수본〉 보험급여과 수정 사항</td></tr>
<tr><td></td><td>▶ 일상회복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별도공지 시까지)</td><td>▶ (삭제)</td><td></td></tr>
<tr><td></td><td>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td><td>▶ (삭제)</td><td></td></tr>
</table>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삭제)	
303	Q3.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진료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선별진료소 및 국민안심병원 찾기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삭제) (삭제) ○ (삭제)	〈지침관리팀〉 수정
303 ~ 304	Q6.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한 경우는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응급상황에서 실시한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	Q6.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사례정의 및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삭제)	〈중수본〉 보험급여과 의견 추가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❶,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및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 환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❷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KTAS 1.2 등급 또는 KTAS 3 등급 중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또는 시술)이 필요하거나 응급분만환자의 경우 ○ 응급상황의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는 법령에서 정한 해당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며,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는 검사 비용의 5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의 검사 비용 및 본인부담률 등은 건강보험 법령에 따라 변동 가능	▶ 단,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에서는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중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만 검사비용 무료 ①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③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신속항원·응급용선별검사 양성자 ○ 의료기관의 확진검사(응급상황),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등은 법령에서 정한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검사 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의 검사 비용 및 본인부담률 등은 건강보험 법령에 따라 변동 가능	
305	Q13.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나요? ○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습니다(전액본인 부담도 불가).	Q13.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나요? ○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습니다.	〈중수본〉 보험급여과 의견 추가
305	Q14.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에 보호자가 동행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선별진료소에서 소아, 발달장애인 등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검체 채취실에 동행할 수 있으며,	Q14. 검체 채취 시에 보호자가 동행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소아, 발달장애인 등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검체 채취실에 동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이 경우 보호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여 동행이 가능합니다.	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여 동행이 가능합니다.	
306	(신설)	Q16~25 질문지 추가	(진단총괄팀) 질문지 추가
306	Q1. 코로나19의 치료법이 있나요? ○ 국내는 식약처가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상황에 따라 렘데시비르(베클루리주), 레그단비맙(렉키로나주)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신설)	Q1. ------ ○ 국내는 식품의약약품안전처가 허가·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주사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와 먹는치료제인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 및 리토나비르)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상기 치료 외에도 대증치료, 합병증에 대한 치료도 가능	〈환자관리팀〉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내용 반영
307	5. 접촉자 및 확진환자 Q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5. ---------- Q1. ---------- ○ 가족, 중증 진행 고위험군▶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 6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3종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 만성 신질환, 당뇨, 활성암, 만성 폐질환, 심혈관계 질환(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뇌졸중, 협심증 등), 면역억제질환(예: 골수/장기이식, 원발성 면역결핍), 고혈압, 겸상적혈구 질환, 신경발달 장애 등 ▶ 지자체 대응 여건에 따라 기타 시설 조사 포함 가능 - 확진자가 유증상일 경우 증상발생일 2일 전부터 확진 시까지 접촉자를 조사하고, 유증상자 확진일이 증상발생 후 5일이 경과한 경우 5일까지 조사 - 무증상일 경우에는 검체채취 2일 전부터 확진시까지 접촉자를 조사	〈역학조사팀〉 현행화
307	Q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 시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했는데 접촉자로 분류되나요? ○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탈의하면	Q2. ---------- ○ ----------	〈역학조사팀〉 Q1과 중복 내용 삭제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접촉자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 (삭제)	
307	Q3.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0일 동안 격리(자가, 시설, 병원)를 실시합니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Q3. ---------- ○ 예방접종력, 감염취약시설 연관성 정보를 바탕으로 ---------- ---------- 7일 동안 격리(자가, 시설, 병원), 능동감시, 수동감시를 실시합니다.	〈역학조사팀〉 접촉자 격리기간 등 7일로 축소 현행화
309	**Q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2020년 2월 23일(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확진환자 이동경로 동선 공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지자체 누리집 → 지자체 코로나19 누리집 → 발생 동향 → 확진자 이동 경로	(삭제)	〈지침관리팀〉 삭제
310	**Q10. 확진환자의 정보 중 거주지 공개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확진환자의 거주지 세부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확진환자의 역학조사 및 정보공개 주체가 시·군·구인 점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 단위정보	(삭제)	〈지침관리팀〉 삭제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까지 공개 가능 합니다.		
311	Q2. 어떤 상황에서 환자를 동일집단격리(코호트) 영역에 배치해야합니까? ○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는 전파주의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을 분산 배치할 병실이 부족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 환자의 병상은 최소 2m의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커튼은 추가적인 물리적 차단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Q2. 어떤 상황에서 환자를 동일집단격리(코호트) 영역에 배치하게 되나요? ○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는 격리를 요하는 ~~전파주의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을 분산 배치할 병실이 부족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 환자의 병상은 최소 2m의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커튼은 추가적인 물리적 차단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지침관리팀〉 수정
311	Q3.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 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확진환자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 중 확진환자가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다른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 해제합니다. ○ 단, 다른 환자들이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하면 해제 가능합니다.	Q3.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된 확진환자의 해제 기준은 어떻게〈지침관리팀〉 수정 되나요? ○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 중 확진환자가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다른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 해제합니다.~~ ○ ~~단,~~ 다른 환자들이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격리해제 기준을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하면 해제 가능합니다.	〈지침관리팀〉 수정
311	6. 격리 및 격리해제 Q4. 무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기준은 어떤가요? ○ 임상경과 기준 또는 검사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6. 격리 및 격리해제 Q4. 확진환자의 격리해제기준은 어떤가요? ○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환자관리팀〉 확진자 격리해제기준 변경(격리기산일, 격리기간 단축: 10→7일) 사항 반영,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임상경과 기반) ·(기간)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증상)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 (검사 기반)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증상)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추가〉	- (기간)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Q4-1. 격리기간 기산일인 검체채취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확진일 정보 등을 참고하여 본인이 진술한 검체채취일로 격리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병원체 확인' 또는 '진단검사관리'	검체채취일 확인 방법 추가
312	Q5. 유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기준은 어떤가요? ○ 임상경과 기준 또는 검사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 (임상경과 기반)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임상경과 기반):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최대 20일까지 적용(20일 경과 시 격리해제)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위중증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 (검사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Q5. 위중증 환자의 격리해제기준은 어떤가요? ○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 (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최소 10일 경과, 최대 20일까지 적용(20일 경과 시 격리해제)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위중증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환자관리팀〉 위중증 환자의 격리해제기준 추가 등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증상)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312	Q6. 변경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해제된 후 어떻게 관리하나요?	(삭제)	〈지침관리팀〉 삭제
312	Q7.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최근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병 10일 후 전파력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6. ---------- ○ 최근 오미크론형 변이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 및 실험실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7일 후----------.	〈환자관리팀〉 위중증 환자의 격리해제기준 추가 등
313	Q9. 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9~10일) 시행 후, 1회 혹은 2회 이상 미결정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9. 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9~10일) 시행 후~~, 1회 혹은 2회 이상 미결정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침관리팀〉 수정
314	Q13. 최초 확진환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12. ~~최초~~ 확진환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침관리팀〉 수정
315	Q17.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양성 반응은 어떤 의미인가요?	(삭제)	〈지침관리팀〉 삭제
316	Q18. 확진자인 아이와 생활치료센터에 동반 입소한 보호자는 언제 퇴소 또는 격리해제가 가능한가요? ○ 동반 입소자인 보호자(입소 당시 PCR 검사 결과가 음성	Q17. 확진자인 아이와 생활치료센터에 동반 입소한 보호자는 언제 퇴소 또는 격리해제가 가능한가요? ○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 퇴소기준 변경 및 입퇴소 이동수단 변경사항 반영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인 경우)는 확진자인 아이가 생활치료센터 퇴소 요건이 되었을 때, 퇴소일 하루 전 1회의 PCR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을 유지한다면 퇴소가 가능합니다(임상증상 등에 대한 의료진판단에 따라 입소 중간에 추가 PCR 검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생활치료센터에 7일만 머무른 경우 자가격리 3일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다만, 보호자는 확진자인 아이를 격리해제 시점까지 밀접접촉하였기 때문에 격리해제 시점부터 10일간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생활치료센터 담당자(퇴소 직후 격리해제되는 경우) 또는 지자체 자가격리자 관리 담당자(퇴소 후 자가격리를 수행하는 경우)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보호자의 상황을 반드시 전달하여 별도의 자가격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확진자 격리해제 시, 동반입소 보호자의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관리** - (예방접종완료자) PCR 검사 음성일 경우 최종접촉일 기준 10일간 수동감시 - (예방접종미완료자) PCR 검사 음성일 경우 최종접촉일 기준 10일간 자가격리 ○ 만약, 보호자에 대해 퇴소일 하루 전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도 격리해제 요건을 충족한 아이는 돌봄이 가능한 다른 보호자가 있을 경우 퇴소 및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9192호(2021.9.10 시행) 참조) ▶ 아이가 퇴소한 이후 3일간 자가격리하는 동안 돌봄이 가능한 다른 보호자와 접촉한 경우에 대한 사항은 Q19 참조 - 한편, 확진된 보호자는 입소하는 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	---------- ---------- ----------임상증상 등에 대한 의료진판단에 따라 입소 중간에 추가 PCR 검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 - 그러나 ----------. ▶ **확진자 격리해제 시, 동반입소 보호자의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관리** - (예방접종완료자) PCR 검사 음성일 경우 최종접촉일 기준 7일간 수동감시 - (예방접종미완료자) PCR 검사 음성일 경우 최종접촉일 기준 7일간 자가격리 ○ ---------- ▶ ---------- ----------	

<table>
<tr><th>쪽</th><th>현행(10-3판)</th><th>1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
<td></td>
<td>었던 경우 PCR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무증상 확진자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요건 충족 시 퇴소 및 자가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 (예시) 아이가 9월 1일 확진되어 입소하고 7일간 생활치료센터에 머물고, 3일간 자가격리 하는 경우
<table>
<tr><th>구분</th><th>9.1</th><th>9.2~9.7</th><th>9.8~9.10</th><th>9.11~9.20</th><th>9.21</th></tr>
<tr><td>아이(확진자)</td><td>입소</td><td>시설격리</td><td>퇴소 및 자가격리</td><td>격리해제(9.11 12시)</td><td></td></tr>
<tr><td>보호자(동반입소)</td><td>입소</td><td>시설격리</td><td>퇴소 및 자가격리(PCR 결과 음성 시)</td><td>자가격리*(보건소 별도 통지 필요)</td><td>격리해제(PCR 결과 음성 시, 9.21 12시)</td></tr>
<tr><td>밀접접촉자(미입소)</td><td colspan="3">자가격리</td><td>격리해제(9.11 12시)</td><td></td></tr>
</table>
</td>
<td>----------

▶ (예시) ----------

<table>
<tr><th>구분</th><th>9.1</th><th>9.2~9.7</th><th>9.8~9.10</th><th>9.11~9.17</th><th>9.18</th></tr>
<tr><td>[확진자] 아이</td><td>입소</td><td>시설격리</td><td>퇴소 및 자가격리</td><td>격리해제(9.11 12시)</td><td></td></tr>
<tr><td>[동반입소] 보호자(접종완료)</td><td>입소</td><td>시설격리</td><td>PCR 결과 음성 시 퇴소 및 자가격리</td><td>수동감시(보건소 별도 통지 필요)</td><td>감시해제(PCR 결과 음성 시, 9.18 12시)</td></tr>
<tr><td>[동반입소] 보호자(접종미완료)</td><td>입소</td><td>시설격리</td><td>PCR 결과 음성 시 퇴소 및 자가격리</td><td>자가격리(보건소 별도 통지 필요)</td><td>감시해제(PCR 결과 음성 시, 9.18 12시)</td></tr>
</table>
</td>
<td></td>
</tr>
<tr>
<td>317</td>
<td>Q19.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 퇴소 이후 3일간 자가격리하는 과정에서 집에서 가족을 만나는 경우 접촉하는 가족도 격리해야 하나요?</td>
<td>(삭 제)</td>
<td>〈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의견 반영</td>
</tr>
</table>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Q20.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 퇴소 이후 3일간 자가격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삭 제)	
319	Q25.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국내 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Q22.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 국내 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320	7. 7일 입소 후 3일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	(전체 삭제)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 퇴소기준 변경
321	7. 7일 입소 후 3일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 Q2. 7일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퇴소환자가 해당하나, 환자 본인이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예방접종 미완료 확진자의 7일 입소 후 3일 자가격리 (자율격리) Q2. 예방접종미완료 확진자는 7일 이후 3일간 자가격리(자율격리)에 해당하나,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 퇴소기준 변경 및 입퇴소 이동수단 변경사항 반영
322	Q8. 9월10일 증상 발생, 9월11일 검사하고 9월12일 확진되었으나, 9월14일 입소하게 되는 경우, 9월17일에 퇴소하면 되나요? ○ 9월12일 확진된 이후 기초역학조사서에 따른 환자초기분	Q8. ---------- ○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 퇴소기준 변경 및 입퇴소 이동수단 변경사항 반영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류는 필요합니다. - 병원으로 분류된 경우 : 의료기관에 입원 필요함(입원치료 이후에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 - 생활치료센터로 분류된 경우 : 9월14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고, 이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9월17일 퇴소하고,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함	---------- ---------- ---------- ---------- ---------- ---------- 자가격리(자율격리)가 필요함	
322	Q10. 무증상으로 생치 입소하였다가 예를 들어 6일째 증상이 발현하였다면 6일부터 7일간 추가격리하여 총 12일간 시설 격리 후 퇴소해야 하는지요? - 이 경우 3일 자가격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2일째 증상발생하여 9일째 퇴소한다면 자가격리는 며칠 해야 하는지요? - 통보 양식 업무 연락에는 3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2일간, 1일간으로 수정해서 통보해야 하는 건지요? ○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진일을 기준으로 하나, 이후에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상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만약 9월1일 무증상으로 확진되었으나, 9월6일 증상이 발생한 경우, 9월6일이 기준일로서 7일간 입원(또는 입소) 이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3일간의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 7일 간의 입원(또는 입소) 이후 3일간의 자가격리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만약 9월12일에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Q10. 무증상으로 생치 입소하였다가 예를 들어 6일째 증상이 발현하였다면 6일부터 7일간 추가격리하여 총 12일간 시설 격리 후 퇴소해야 하는지요? - 이 경우 3일 자가격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2일째 증상발생하여 9일째 퇴소한다면 자가격리는 며칠 해야 하는지요? - 통보 양식 업무 연락에는 3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2일간, 1일간으로 수정해서 통보해야 하는 건지요? ○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진일을 기준으로 하나, 이후에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상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만약 9월1일 무증상으로 확진되었으나, 9월6일 증상이 발생한 경우, 9월6일이 기준일로서 7일간 입원(또는 입소) 이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3일간의 자가격리(자율격리)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 7일 간의 입원(또는 입소) 이후 3일간의 자가격리(자율 **않은 경우**입니다. - 만약 9월12일에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지침관리팀〉 수정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되어 퇴소한다면, 이로부터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되어 퇴소한다면, 이로부터 3일간 자가격리(자율격리)가 필요합니다.	
324	Q11. 9월1일 증상이 발생하여 9월2일 확진된 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경과관찰 중 9월5일 증상이 악화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은 후, 9월 8일에 의학적 치료가 필요 없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이 경우 3일 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9월8일 의학적 치료가 필요없다고 의사가 판단하여 퇴원하게 되면, 증상발생일(9월1일)로부터 8일이 지났으므로, 2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Q11. ---------- - ---------자가격리(자율격리)는 ---------- ○ ---------- 자가격리(자율격리)가 필요합니다.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 퇴소기준 변경 및 입퇴소 이동수단 변경사항 반영
	Q14.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여 증상발생일 이후 7일 넘게 입원치료하는 경우 3일의 자가격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 본 공문 내용 관련하여 "7일 간의 입원(또는 입소) 이후 3일간의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의 전제조건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진 판단 하에 치료를 진행하면 됩니다.	Q14.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여 증상발생일 이후 7일 넘게 입원치료하는 경우 3일의 자가격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 "7일 간의 입원(또는 입소) 이후 3일간의 자가격리(자율격리)"의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 퇴소기준 변경 및 입퇴소 이동수단 변경사항 반영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327	Q23. 원칙적으로 7+3 이라고 하더라도, 병상수급상황, 자가격리장소 확보여부, 심리상태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7+3을 하지 않고 기존의 10을 그대로 할 수는 없나요? ○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7일까지는 의료기관에 입원(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이고, 이후 3일은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23. ---------- --- --- --- 3일 간 추가로 입소를 유지할 수는 없나요? ○ ---------- --- ---------- 자가격리(자율격리)로 ----------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 퇴소기준 변경 및 입퇴소 이동수단 변경사항 반영
327	Q24. 7일 이후 퇴원(또는 퇴소)시 이동수단으로 대중교통 가능한가요? Q25. 자차가 없는 경우 자가 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7일 이후 퇴원(또는 퇴소)시 이동수단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백신접종을 완료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이용 가능합니다. ▶ (예)KF94이상 마스크 및 운전자 장갑 착용, 퇴소자 뒷좌석 착석, 신체접촉 및 차내 음식섭취 금지, 주기적 환기, 하차 후 차내·외 표면소독, 격리장소 외 경유 또는 하차금지, 운전자만 동승하고 그 외는 탑승자제 등 - 다만, 밀접도가 높지 않은 택시도 백신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합니다.	Q24. ---------- ---------- Q25. ---------- ○ ---------- ---------- ---------- ---------- ▶ (예)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및 장갑 착용, 환자 뒷좌석 대각선에 착석, 신체접촉 및 차내 음식섭취 금지, 하차 후 차내 · 외 표면소독, 운전시 창문개방, 격리장소 외 경유 또는 하차금지, 운전자만 동승하고 그 외는 탑승자제 ----------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 퇴소기준 변경 및 입퇴소 이동수단 변경사항 반영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안내」 참고 - (이동차량) 퇴소자가 개별준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협조요청함 - (퇴소) 생활치료센터의 안내에 따라 퇴소함 - (사후관리) 시군구(보건소)에서 퇴소자에 대하여 관리하도록 함	▶ (삭 제)	
328	Q28. 생활치료센터 입소 7일 후 퇴소하는 경우 시스템상 전원인지 아니면 격리해제인지?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에서 7일을 보낸 후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를 하는 환자에 대하여,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자가격리(보건소)"로 "전원" 처리	Q28. ---------- ○ ---------- 가격리(자율격리)를 ----------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 퇴소기준 변경 및 입퇴소 이동수단 변경사항 반영
	Q29. 확진환자가 7일 경과 후 퇴원하는 날이 격리해제일이 되는 건가요? 그 후 3일간 자가격리자에 준해서 격리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확진자로서는 7일이 끝나는 것인가요? ○ 격리기간은 증상발생 이후 최소 10일간입니다(임상경과	Q29. ---------- ---------- ---------- ---------- ---------- ○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 퇴소기준 변경 및 입퇴소 이동수단 변경사항 반영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기반 격리해제 기준 적용시). 그 중 7일간은 입원(또는 입소)기간이고, 3일간은 자가격리에 준하는 기간입니다.	---------- ---------- 자가격리(자율격리) 기간입니다.	
328	Q31. 기초역학조사서에 추가된 5-1 문항(재택치료를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은 3일 자가격리와는 연관이 없고 일반적인 재택치료에 대해 묻는 것인가요? ○ 기초역학조사서에 추가된 5-1 문항은 확진자로 판정되고 나서, 초기 환자분류를 위해 조사하는 항목으로, 3일간의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Q31. ---------- ---------- ---------- ○ ---------- ---------- -- 자가격리(자율격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 퇴소기준 변경 및 입퇴소 이동수단 변경사항 반영
329	8.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Q1. ---------- ---------- ---------- (이하 생략) Q5----------	(이하 전체삭제)	(지침관리팀) 사례정의 개정에 따른 삭제
331	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삭제) Q1. Q2-1, Q2-2, Q3 삭제	9. ---------- (삭제)	〈역학조사팀〉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이 아닌 조사대상 기준의 관리 필요에 따라 수정 Q1. Q2-1, Q2-2, Q3 삭제 번호 수정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Q1. 예방접종완료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로 규정하는데, 2주 경과일은 언제가 되는지? ○ 2차 예방접종완료일: 9.1일, 2주째: 9.15일, 지침 적용일: 9.16일 0시부터 ▶ 예시)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 2차 접종일이 9.1일이라면, (해외입국자) 입국일/(밀접접촉자) 최초접촉일이 9.16일 0시 이후인 경우 격리면제 적용 가능 Q2-1. 1차 접종자인 경우에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Q2-2.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했습니다.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 경과 전에 출국하는 경우에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A2-1)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니므로 본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님. 예방접종미완료자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평균 2주 소요된다는 점에 기반한 것으로, 항체 형성 이전 확진자 밀접접촉 시 감염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 ○ (A2-2)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라면 지침 적용 가능 ▶ 예시)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 2차 접종일이 9.1일이라면, (해외입국자) 입국일이 9.16일 0시 이후인 경우 격리면제 적용 가능 Q3.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된 경우, 자가격리면제 및 수동감시 유지 조건으로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밀접접촉 시점과 수동감시 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최초접촉일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인 상태를 의미하며, 최종접촉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332	Q4. 예방접종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2차 예방접종완료일: 9.1일, 2주째: 9.15일, 지침 적용일: 9.16일 0시부터	Q1. ---------- (삭제)	〈역학조사팀〉 질문에 맞게 증명서 발급 방법만 유지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332	Q5. 국내예방접종완료자인데 ① 해외입국 시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②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및 6~7일차 검사를 위해 관할 보건소에 갈 때/해외입국자가 입국 1일차 검사 및 6~7일차 검사를 위해 관할 보건소에 갈 때~~ ~~③ 확진자 밀접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가 수동감시 중 증상발생으로 관할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나요?~~ ○ (①)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마스크 착용, 가능한 자차 이용,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 (②)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가능한 자차를 이용, 반드시 마스크 착용~~ ~~○ (③)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업무담당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리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 이 때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해야 하며,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또는 보건소로 이동 시 자차, 도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Q2. 국내예방접종완료자인데 ① 해외입국 시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삭제) ○ (①)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시에는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삭제) (삭제)	〈해외출입국관리팀〉 수정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해야 하며, 확진자 관련 조치 시행~~		
333	Q6.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입니다. 본 지침(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적용을 받아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에 대해 적용. 다만,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경우 향후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면,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 ▶ 국가 간 협약 또는 상호인정 합의 국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관련 사항 등 - 업무별 담당 부서 및 연락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실무연락처▶ 참조 ▶ 실무연락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알림·자료→ 법령·지침·서식→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첨부 파일 참조	Q3.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입니다. 본 지침(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적용을 받아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강화 조치로,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격리 하여야 합니다. (삭제) (삭제)	〈해외출입국관리팀〉 수정

쪽	현행(10-3판)	11판 개정(안)	개정사유
333	Q7-1. 접종국가가 서로 다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국내 1회, 국외 1회)도 본 지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Q7-2. 주한미군부대 · 대한민국 주재 외국대사관 한국국적 접종완료자입니다. 본 지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A7-1) 국내 접종력이 1회 이상인 경우 국내 예방접종증명서에 1차·2차 모두 포함하여 발급되므로, 현행 지침 적용 가능 ○ (A7-2) 국내 예방접종증명서에 1차·2차 모두 포함하여 발급되면 현행 지침 적용 가능	Q7-1. 접종국가가 서로 다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국내 1회, 국외 1회)도 본 지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Q7-2. 주한미군부대 · 대한민국 주재 외국대사관 한국국적 접종완료자입니다. 본 지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공통)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강화 조치로,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격리 하여야 합니다. (삭제)	〈해외출입국관리팀〉 수정
337	Q3.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개발 및 연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백신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항바이러스제 및 항체치료제 등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식약처가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상황에 따라 렘데시비르(베클루리주), 레그단비맙(렉키로나주)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는 -------	Q3.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 ---------- 국내는 식품의약약품안전처가 허가·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주사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와 먹는치료제인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 및 리토나비르)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는 -------	〈환자관리팀〉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내용 반영